

2021

민주노총 수도권

이주노동자 상담법률학교

프로그램 (9.16목 1시-6시)

“1강”

코로나 2년,
이주노동자를
둘러싼 정세

정영섭
이주노동자운동후원회

“2강”

2021이주노동자
최근의 상담사례
정리

류지호
의정부이주노동자센터

“3강”

이주노동자
건강권 실태와
우리의 과제

이한숙
이주와인권연구소

일시

2021.9.16(목) 오후1시-6시

장소

민주노총 교육원

참가

민주노총 가맹산하조직, 관심 있는 이들 누구나
총 30명 선착순(참가비 무료)

참가신청

bit.ly/2021이주상담법률학교

※ 문의: 민주노총 미조직전략조직실 02-2670-9151,
withkctu@gmail.com

— 자료집 순서 —

-
- || 교육과정 || 이주노동자 상담법률학교_____5
 - || 1강 || 코로나19 2년, 이주노동자 상황과 요구_____10
 - || 2강 || 2021 이주노동자 최근의 상담사례 정리_____31
 - || 3강 || 이주노동자 건강권 실태와 우리의 과제_____57
 - || 평가 || 별지삽입
-

2021 민주노총 수도권
이주노동자 상담법률학교

-
-
-
-
-
-
-
-
-
-

|| 교육과정 ||

2021년 민주노총 수도권
이주노동자 상담법률학교

— ○ — 교 육 일 정 — ○ —

2021년 9월 16일(목) 13시-16시

민주노총 교육원

시 간	내 용	강사/비고
13:00~13:10	등록, 접수	미전실
13:10~13:20	참가자 상호인사	참가자 전체
13:20~14:20 (1시간)	(1강) 코로나 시대 2년, 이주노동자의 상황과 요구	이주노동자운동후원회 정영섭 사무국장
14:30~16:00 (1.5시간)	(2강) 최근 이주노동자 상담 사례 특징과 해설	의정부 외국인노동자센터 류지호 상담팀장
16:10~17:40 (1.5시간)	(3강) 이주노동자 건강권 실태	이주와 인권연구소 이한숙 소장
17:40~17:50	평가 및 사진 촬영	미전실
17:50~	저녁식사 및 뒤풀이	함께

교육과정 세부안내

2021년 민주노총 수도권 이주노동자 상담법률학교

6년차에 접어든, 이주노동자 상담법률학교!

이주노동자 노동 법률 상담 뿐 아니라, 이주 인권 문제 등 폭넓게 교육해온 이주노동자 상담법률학교가 어느덧 6년 차에 이르렀습니다. 민주노총 가맹·산하 조직 내 이주노동상담 실무 역량을 키우기 위한 교육에서 출발해, 이주 인권과 노동권에 관심 있는 활동가들에게도 교육의 장을 열며 함께 나뉘은 과정이기도 합니다. 코로나19가 강타한 지난해부터는 권역별로 나누어 각기 지역 상황과 요구에 맞는 교육을 실시하여, 보다 폭 넓은 지역과 대상들을 향해 다가가고자 기획하고 있습니다.

모든 노동자의 민주노총을 향한 첫 걸음!

140만 이주노동자가 노동하는 한국 사회, 이주노동자들은 향후 민주노총의 주요 구성원이 될 것입니다. 이주노동자는 미조직 노동자 중 다수를 차지하고 있지만 이주노동자를 둘러싼 여러 법, 제도적 쟁점들에 대해서는 평소 염두에 두기 어려운 문제이기도 합니다. 고용허가제 등 이주노동제도, 상이한 체류자격, 이주노동자들에게 처해진 여러 차별적 현실들에 대해 함께 공부하고, 고민하며, 대안을 마련해가는 과정은 조직화의 토대를 쌓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찾아주신 동지들의 발걸음으로, 더 나은 이주-정주 노동자들의 연대와 협력을 만들어갑니다.

“노동자는 하나! 동지의 소중한 실천으로 만들어갑니다”

2021 민주노총 수도권
이주노동자 상담법률학교

•
•
•
•
•
•
•
•
•
•

|| 1강 ||

**코로나 시대 2년,
이주노동자 상황과
요구**

정영섭
이주노동운동후원회 사무국장



코로나 2년, 이주노동자 상황과 과제

이주노동자운동후원회 정영섭

민주노총 수도권 이주노동자 상담법률학교 2021.9.16

1

민주노총 수도권 이주상담법률학교

2021



코로나가 이주노동자에게 끼친 영향

코로나 이전에도 사회구조적으로 이주노동자, 이주민에 대해 심각했던 인종차별

이주민을 구조적으로 차별하는 법제도

코로나 재난시기 차별의 양상, 강도, 범위의 확대
노동과 삶의 전반에 영향

재난시기 차별과 배제, 혐오가 더 심각

“우리는 여기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닌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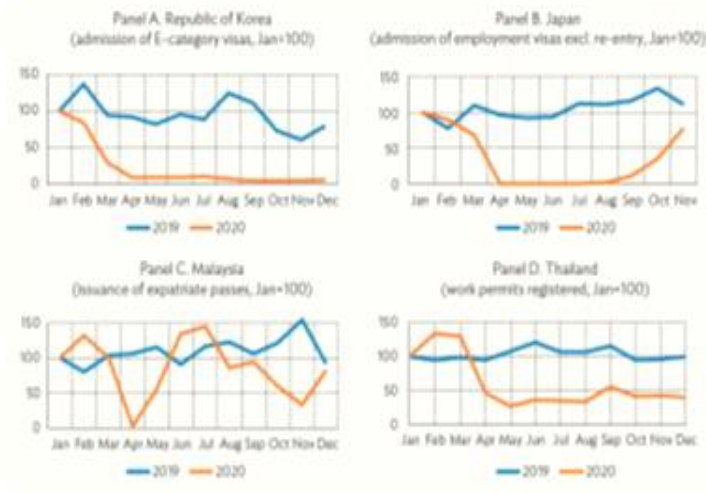
→ 사회구성원으로서의 권리, '성원권'에 대한 문제제기

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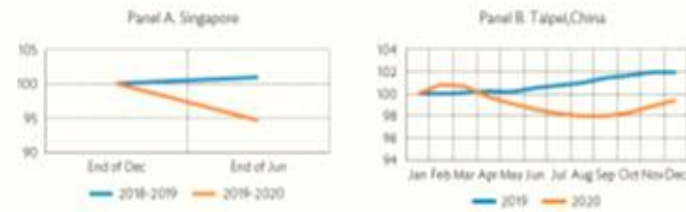
코로나와 세계의 이주노동자

1) 이동성, 일자리의 감소, 이주노동자 숫자 감소 [LABOR MIGRATION IN ASIA] (ADB, OECD, ILO, 2021) 참고



03

Figure 1.3: Changes in Stock of Foreign Workers, 2019-2020
Jan =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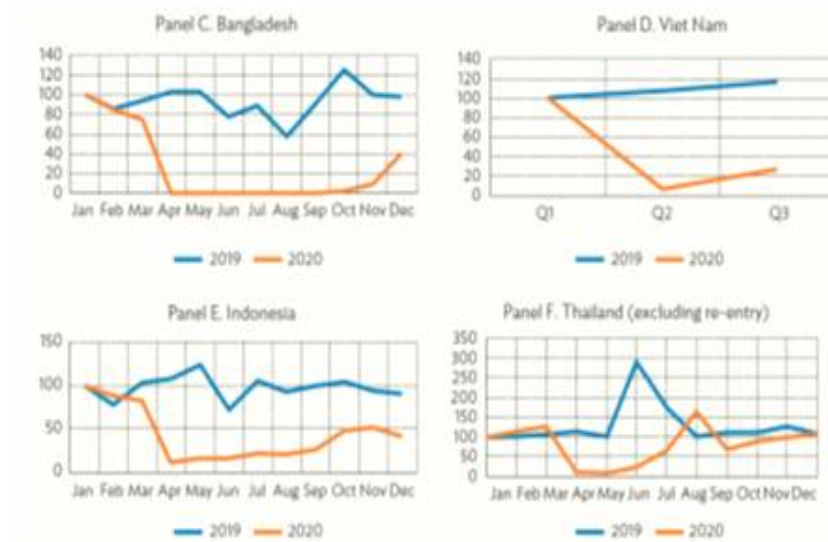


Source: Official data from national authorities.

Figure 1.4: Changes in Outgoing Deployment, 2019-2020
Jan = 100



4



05

민중노총 수도권 이주상담법률학교

2021



- 2) 본국으로 귀환자 증가 (코로나로 인한 이주노동자 일자리 축소)
- 네팔은 2020년 8월까지 16만 명 귀환. 인도로부터 50만명 귀환 추정
 - 방글라데시는 2020년 11월까지 227,000명 귀환
 - 필리핀은 2020년 8월까지 147,000명 귀환
 - 귀환자들의 일자리 상실, 지원 정책 부족

3) 송금액 감소

- 2020년 이주노동자의 아시아 본국으로의 송금액 약 7% 감소
- GDP에서 송금액이 큰 비율 차지하는 국가들에 타격

Figure 1.11: Remittances to Asia, 2000-2020



06

- 세계은행은 중저소득 국가로 유입되는 이주노동자 송금액이 2020년 5080억 달러로, 전년 대비 7%, 2021년에는 코로나 이전에 비해 14% 감소할 것으로 예상

4) 임금체불, 학대 등 증가

- 귀환자 조사 시 43%가 코로나 관련 고용관련 문제, 학대 등을 겪었다고 응답 (ILO)

5) 여성이주노동자 고통 증가

- 이주가사여성노동자 해고 시, 머무를 곳이 없어짐. 코로나로 인해 휴일이 없어짐.

6) 내국인에 비해 높은 코로나 환자, 사망자 비율

- 예컨대 프랑스의 경우 2020년 3월-4월 사망자 수 총 12만 9,000명(전년대비 25% 증가). 외국출생자 중 사망자의 비율은 2019년 22%에서 2020년 48%로 증가. 이민자의 사망자 증가율은 프랑스인 사망자 증가율(22% 증가)보다 크게 높음. 출신 지역별로 보면 북아프리카(54% 증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114% 증가), 아시아(91% 증가) (코로나19와 이주노동자, 이태훈)

- 미국 등에서 이민자들의 확진비율, 사망비율이 더 큰 상황

7

코로나 이후 이주민 숫자의 변화

(단위: 만 명)



이하 자료: 법무부 통계월보

8

2021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7월
총 계	2,150,490	2,267,807	2,504,868	2,028,076	1,974,141
중 국	1,018,074	1,070,888	1,101,792	984,908	982,204
한국계	679,729	705,032	701,095	647,678	624,769
베트남	169,730	198,833	204,513	211,249	209,293
태국	168,769	197,784	209,909	181,988	174,393
미 국	143,583	161,013	166,902	146,590	145,883
우즈베키스탄	82,570	85,433	76,320	86,206	86,999
러시아 (연방)	44,351	54,064	61,427	50,410	49,322
필리핀	53,430	60,139	62,393	49,200	47,920
몽골	45,744	48,298	43,156	42,511	39,437
캄보디아	47,106	47,012	47,886	41,406	41,159
네 팔	38,627	40,458	42,731	39,743	37,199
인도네시아	45,323	47,368	43,354	38,353	36,101
카자흐스탄	22,322	30,717	34,633	29,279	30,370
일본	53,670	60,373	56,196	38,515	37,607
미얀마	24,902	23,074	29,294	28,412	26,339
계나 다	26,692	26,934	26,739	21,784	21,867
스리랑카	28,918	26,323	26,084	22,466	20,201
(타이완)	38,183	41,308	42,787	19,444	18,931
방글라데시	18,086	18,841	15,340	18,323	16,839
파키스탄	12,697	13,276	13,990	12,842	12,783
키르기스	6,790	6,336	6,613	6,710	6,903
기타	99,862	106,639	126,633	71,083	71,699

22% 감소

9

2021

취업자격 이주노동자 현황

2021.7

구분	총 계		전문인력		단순기능인력			
취업자격 체류외국인	421,843		44,958		376,885			
계	단기취업 (C-4)	교수 (B-1)	외화지도 (B-2)	연구 (B-3)	기술지도 (B-4)	전문직업 (B-5)	예술총행 (B-6)	독정활동 (B-7)
44,958	2,664	2,126	12,895	3,278	196	292	3,264	20,249
계	계절근로 (B-8)		비전문취업 (B-9)		선원취업 (B-10)		방문취업 (H-2)	
376,885	493		219,570		17,862		138,960	

2020.1

구분	총 계		전문인력		단순기능인력			
총 체류외국인	574,379		46,670		527,709			
계	단기취업 (C-4)	교수 (B-1)	외화지도 (B-2)	연구 (B-3)	기술지도 (B-4)	전문직업 (B-5)	예술총행 (B-6)	독정활동 (B-7)
46,670	1,238	2,193	13,894	3,122	216	643	3,653	21,661
계	비전문취업 (B-9)		선원취업 (B-10)		방문취업 (H-2)			
527,709	280,707		17,702		229,300			

28.6% 감소

10



코로나 시기, 이주노동자의 어려움과 차별(1)

정보접근 차별과 소외

매일 술하게 쏟아지는 코로나 관련 정보는 대부분 한글

확진자발생현황, 동선, 방역대책 세부 지침, 피해지원 정책 등 초기에 예방수칙, 자가격리수칙 정도를 제외하고 다국어번역 미흡 이해하기 어려운 안전안내문자는 오히려 불안감 조성 많은 부분 자국 커뮤니티나 지원단체 등을 통해 정보 접근 백신접종예약 사이트는 한글로만 되어 있어서 접근성 부족

공적 마스크 구매 차별

공적 마스크 5부제에서 건강보험에 미가입된 이주민 제외

이주민 가운데 절반 정도인 125만 명만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상황 2019.7.1부로 6개월이상 체류시 지역건보 의무가입 정책 시행. 유학생들은 2021년으로 가입유예. 건보 미가입자, 미등록체류자등 이주민 절반이 공적 마스크를 구매 못함. 4.20부터 건보가입 없어도 외국인등록증으로 구매 가능. 7.11 공적마스크 종료. 코로나 초기에 가장 컸던 문제임.



코로나 시기, 이주노동자의 어려움과 차별(2)

재난지원금 배제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중앙정부 재난 지원금, 광역/기초지자체별 지원금 배제와 차별

처음에 서울시는 결혼이주민, 난민대상/ 경기도는 이주민 전체 배제했다 결혼 이주민과 영주권자 포함/ 중앙정부는 결혼이주민, 영주권자대상. 장기체류 이주민 대다수를 광범위하게 배제. 이주운동진영의 지속적인 항의와 인권위 진정과 권고 등을 통해 서울시는 취업가능 등록이주민으로 지급대상 확대. 그러나 경기도는 2021년 초 2차 기본소득 지급시 등록이주민 포함. 부천, 안산 등 일부 기초지자체 제외하고는 대부분 정부 기준 추종. 각종 고용 정책 지원에서도 배제

2021년 정부 제5차 재난지원금 (코로나상생 국민지원금)에서 또다시 결혼이주민, 영주권자만 포함시켜 대다수 이주민 배제 (국민과의 밀접한 연관성? - 국가/국민주의, 국제인권규범과 헌법위배)

- 총 61,105건 신청하여 32,373건 지급. 액수는 1백2억 4천5백2십만원

연번	자치구	신청건수(건)	지급건수(건)	지급금액(천원)
계	서울시	61,105	32,373	10,245,200
1	종로구	1,091	595	185,900
2	중구	1,495	783	248,900
3	용신구	1,003	569	183,700
4	신동구	1,256	714	225,100
5	광진구	3,406	2,025	640,400
6	동대문구	1,513	824	259,500
7	중랑구	988	578	183,600
8	성북구	703	429	139,300
9	강북구	677	372	117,100
10	도봉구	266	152	48,900
11	노원구	269	170	54,700
12	은평구	726	431	142,000
13	서대문구	869	538	174,300
14	마포구	1,019	509	161,600
15	양천구	758	430	137,400
16	강서구	1,228	787	251,800
17	구로구	12,610	6,507	2,056,400
18	금천구	6,872	3,034	965,200
19	영등포구	12,205	6,424	2,025,600
20	동작구	2,991	1,784	558,500
21	관악구	5,732	2,740	863,300
22	서초구	467	276	86,100
23	강남구	504	297	91,600
24	송파구	1,339	771	243,600
25	강동구	1,118	634	200,700

2020년 4차 추경 재난지원정책 중 해당 여부

정책	내용	이주민 해당여부	관할/비고
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특고 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	일정 소득수준 이하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 프리랜서가 코로나19 재확산 등으로 인해 소득이 감소한 경우, 생계안정을 위한 비용 지원 (기수급자) 50만원, (신규 신청자) 150만원	(일부 적용) 원칙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국민을 대상으로 지원함 · 단, 결혼이민자와 15세 이상 자녀로 아직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지 못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인정	고용노동부 결혼이민자 외 대부분의 이주민 제외
고용유지지원금	취업수당의 90%까지 지원	(고용보험 가입자 적용) 고용보험에 임의 또는 당연 가입한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외국인근로자의 경우 지원대상	고용노동부 고용보험 가입된 이주민 수자 자격이 있음
연장된 가족돌봄휴가 「돌봄비용 긴급지원」	가족돌봄휴가 사용기간을 10일(한부모의 경우 15일) 연장, 연장된 가족돌봄휴가 중 5일(한부모의 경우 10일)에 대해 「가족돌봄비용 지원」 (1일 5만원)	(적용) 사업장 및 본인의 고용보험 가입 여부는 무관, 우선지원 대상기업 소속 근로자가 지원 대상이며, 대규모기업 및 공공기관 소속 근로자는 지원대상 아님. 외국인 근로자도 지원 대상	고용노동부
정년특별구직지원금	19~20년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 또는 정년구직활동지원금 참여자 중 코로나19 경기침체로 인한 미취업 정년 1인당 1회 50만원	(일부 적용) 결혼이민자, 결혼이민자의 외국인 자녀	고용노동부 결혼이민자 외 대부분의 이주민 제외



아동특별돌봄/비밀면담신청 지원	중학교 학령기 이하의 아동에게 지원	(다름은 제외) 국외자인 경우 가능, 난민신청자는 포함	보건복지부, 교육부 0세~7세 외국인 제외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금	코로나19 인해 실직, 폐업 등으로 25% 이상 소득감소 피해가 발생한 가구, 가계소득월액 75% 이하	원칙적으로 외국인과 재외국민은 제외 국민과 주민등록인 외국인이거나 배우자 이혼/사망시 그 직계 존비속과 생계와扶養을 거는 모친 이주민 제외 같이하는 경우	보건복지부 거의 모친 이주민 제외
새희망자금	코로나19 매출감소한 연매출 4억원 이하 소상공인 (일반업종 100만원, 특별피해업종 150~200만원 지원)	사업자등록이 있는 외국인도 해당	중소기업벤처부
폐업업종 재도전장려금 지원	코로나 재확산으로 8.16일 이후 폐업 신고한 소상공인	사업자등록이 있는 외국인도 해당	중소기업벤처부
통신키 지원	만16~34세, 만65세 이상 내국인 선불제 및 후불제 가입자 이동통신요금 2만원 할인	외국인 제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아예 결제 비유한 이주민 제외



코로나 시기, 이주노동자의 어려움과 차별(3)

취업활동 체류기간 연장 미흡

코로나 시기 고용기간, 체류연장 미흡

2020.4.14~6.30 사이 고용기간 만료된 이들에 대해 50일 기간 연장
그러나 이후 대책이 없었음. (법무부, 5년 이상 체류 불가 입장이었음)
2021년 3월말이 되어서야 법개정을 통해 1년 연장 (4.13~12.31 체류기간 만료자 대상), E9 62,239명/H2 52,357명 대상
그 이후는?

새로운 인력을 고용할 때까지의 인력공백을 해소하고, ① 안보자는 중국 대기기간이 길어질 경우를 대비해 최소한의 생계유지를 제공하는 후리가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라고 밝혔다.

※외국인근로자에서 취업활동 기간 종료 연장 요청 내용

연월	취업활동 기간	연장 사유		대응 상황
		사유	인원	
2020	4월~6월 (E9고용)	사유 미지정	5,383명	6,049명
	7월~9월 (H2고용)	사유 미지정	5,383명	6,049명
2021	1월~3월 (E9고용)	사유 미지정	5,383명	6,049명
	4월~6월 (H2고용)	사유 미지정	5,383명	6,049명

* 2021 4.13~4.30 일 취업활동 기간 만료자

- 아울러, 고용노동부는 최근 코로나19 유행에 감염이 확산되는 상황에서 외국인에 노동시장 인력수급 상황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고용허가제의 한계 극복을 위한 사업장 인력수급에 더욱 적극적·선제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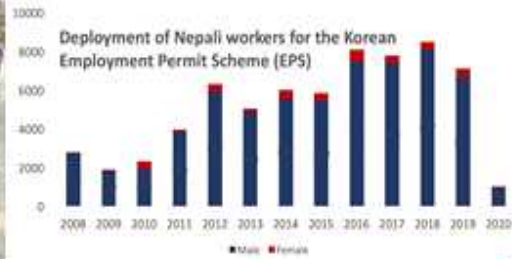


코로나 시기, 이주노동자의 어려움과 차별(4)

본국에서
오지 못하는
노동자들

코로나 시기에 본국에 갔다 돌아오지 못하는 노동자들
휴가차 본국에 갔다가 오려면 자가격리시설 확보 등 까다로운 조건. 재입국특례자, 신규입국자 등은 일부 국가 제외하고 중단. 특히 근로계약이 체결되어 있고,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노동자들의 피해, 끝없는 기다림. 항공편 제한, 록다운, '방역감시강화국가'..

Vickey Ahamed님과 MD Baker Hosen님이 그림 2개에
계시물을 올렸습니다.



- 재입국 특례자 신고자 전체 인원(국가별)														
신청기간: 2020.01.01. ~ 2020.12.31.														
방글라데시	미얀마	캄보디아	스리랑카	중국	인도네시아	키르기스스탄	몽골	네팔	파키스탄	필리핀	동티모르	태국	우즈베키스탄	베트남
586	1254	1943	748	62	890	25	46	1391	142	1615	98	818	389	828
- 재입국 특례자 선정 후 취업 계사가 되지 않은 인원(국가별)														
신청기간: 2020.01.01. ~ 2020.12.31.														
방글라데시	미얀마	캄보디아	스리랑카	중국	인도네시아	키르기스스탄	몽골	네팔	파키스탄	필리핀	동티모르	태국	우즈베키스탄	베트남
585	1117	483	370	18	887	25	21	1390	142	1601	56	276	386	819
- 재입국 특례자 신고자 전체 인원(국가별)														
신청기간: 2021.01.01. ~ 2021.05.31.														
방글라데시	미얀마	캄보디아	스리랑카	중국	인도네시아	키르기스스탄	몽골	네팔	파키스탄	필리핀	동티모르	태국	우즈베키스탄	베트남
177	510	850	707	36	391	5	20	1077	53	506	51	315	148	217
- 재입국 특례자 선정 후 취업 계사가 되지 않은 인원(국가별)														
신청기간: 2021.01.01. ~ 2021.05.31.														
방글라데시	미얀마	캄보디아	스리랑카	중국	인도네시아	키르기스스탄	몽골	네팔	파키스탄	필리핀	동티모르	태국	우즈베키스탄	베트남
177	510	840	704	33	389	5	18	1068	53	503	50	313	144	216



○ 2020년 E-9 외국인근로자 입국자 숫자(월별, 국가별)

(단위 : 명)

구분	합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베트남	260	167	93	0	0	0	0	0	0	0	0	0	0
필리핀	409	199	40	154	0	0	16	0	0	0	0	0	0
태국	627	201	170	88	13	6	55	67	23	4	0	0	0
몽골	63	27	22	0	0	0	0	0	0	11	0	3	0
인도네시아	641	283	98	260	0	0	0	0	0	0	0	0	0
스리랑카	500	265	60	66	0	0	0	0	0	21	36	0	52
중국	24	13	0	0	0	0	0	0	0	0	0	0	11
우즈베키스탄	94	83	10	0	0	0	0	0	0	1	0	0	0
파키스탄	44	19	9	16	0	0	0	0	0	0	0	0	0
캄보디아	2,172	305	133	420	41	116	99	234	60	50	197	182	335
네팔	955	571	384	0	0	0	0	0	0	0	0	0	0
미얀마	700	240	96	209	0	0	0	0	0	68	96	31	0
키르기스스탄	13	2	1	10	0	0	0	0	0	0	0	0	0
방글라데시	141	38	22	81	0	0	0	0	0	0	0	0	0
동티모르	28	23	4	1	0	0	0	0	0	0	0	0	0
라오스	17	17	0	0	0	0	0	0	0	0	0	0	0
합계	6,688	2,453	1,102	1,305	54	122	170	301	83	155	329	216	398



○ 2021년 E-9 외국인근로자 입국자 숫자(월별, 국가별)

(단위 : 명)

구분	합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베트남	373	0	0	0	0	44	111	218	0
필리핀	0	0	0	0	0	0	0	0	0
태국	1,499	0	65	155	187	185	488	301	118
몽골	22	6	0	7	0	0	0	0	9
인도네시아	0	0	0	0	0	0	0	0	0
스리랑카	491	22	27	123	79	81	27	53	79
중국	86	8	1	14	2	44	0	17	0
우즈베키스탄	25	0	0	0	0	1	0	24	0
파키스탄	0	0	0	0	0	0	0	0	0
캄보디아	2,540	291	315	412	504	489	403	85	31
네팔	0	0	0	0	0	0	0	0	0
미얀마	0	0	0	0	0	0	0	0	0
키르기스스탄	0	0	0	0	0	0	0	0	0
방글라데시	0	0	0	0	0	0	0	0	0
동티모르	109	0	0	0	46	0	63	0	0
라오스	0	0	0	0	0	0	0	0	0
합계	5,145	327	408	711	818	854	1,092	698	237



코로나 시기, 이주노동자의 어려움과 차별(5)

해고,
임금체불,
생계위기

코로나 위기 하에서 무급휴직, 계약해지, 해고 등을 더욱 쉽게 당함

통계청 '2020년 이민자 체류 실태 및 고용조사 결과'. 5월 기준 취업자는 84만8000명. 전년대비 1만5000명(-1.8%) 감소. 귀화자 취업자는 2만9000명. 같은 기간 3000명(-9.2%) 감소. 특히 실업자는 7만명. 전년대비 1만9000명(38.2%) 증가해 통계집계 이래 사상 최대. 외국인의 실업률은 7.6%로 전년대비 2.1% 상승.

이후 제조업 회복, 신규인력 유입 중단, 농축산업 등 인력 부족 등으로 현재는 달라졌을 것으로 보임.

올해 상반기 전체 산재사망자 중 이주노동자가 11%. 전체 노동자 숫자 중 이주노동자 비율에 비해 두 배 이상 높음.

코로나19와 이주민인권 모니터링

결과보고 (국가인권위, 2020) 중

- 코로나로 인한 어려움 답변
- 정책/제도적 차별 경험
- 일터에서 경험한 피해

코로나19로 가장 힘든 점



코로나19로 일터에서 경험한 피해



코로나19관련 정책/제도별 차별 경험





임금체불 현황

업종	구분	신고			처리			처리종
		계	신규	이월	계	지도해결	사법처리	
2016년 총계	사업장수	8,082	7,842	328	7,801	5,245	2,851	359
	접수건수	11,759	11,307	452	11,264	6,805	4,459	495
	근로자수	21,482	20,639	843	20,348	10,661	9,687	1,134
	체불금액	68,685	65,814	2,871	64,688	29,547	35,140	3,997

업종	구분	신고			처리			처리종
		계	신규	이월	계	지도해결	사법처리	
2017년 총계	사업장수	10,474	10,222	357	10,113	7,330	3,171	465
	접수건수	14,656	14,165	491	14,079	9,469	4,610	577
	근로자수	23,885	22,765	1,120	22,821	13,790	9,031	1,064
	체불금액	78,370	74,409	3,961	74,431	39,387	35,044	3,939



업종	구분	신고			처리			처리종
		계	신규	이월	계	지도해결	사법처리	
2018년 총계	사업장수	12,097	11,757	461	11,722	8,195	4,030	479
	접수건수	16,951	16,380	571	16,349	10,569	5,780	602
	근로자수	28,021	26,973	1,048	26,580	15,253	11,327	1,441
	체불금액	97,227	93,326	3,901	91,378	45,830	45,548	5,849

업종	구분	신고			처리			처리종
		계	신규	이월	계	지도해결	사법처리	
2019년 총계	사업장수	13,176	12,854	446	12,932	8,945	4,625	365
	접수건수	18,988	18,425	563	18,539	11,821	6,718	449
	근로자수	31,904	30,534	1,370	30,941	17,131	13,810	963
	체불금액	121,682	116,077	5,605	117,545	58,932	58,612	4,138

업종	구분	신고			처리			처리종
		계	신규	이월	계	지도해결	사법처리	
2020년 총계 (2021.6월까지 61,490)	사업장수	12,885	12,634	363	12,718	9,004	4,391	272
	접수건수	18,721	18,274	447	18,314	11,979	6,335	407
	근로자수	31,998	31,047	951	31,164	18,300	12,864	834
	체불금액	128,771	124,645	4,127	125,378	67,816	57,562	3,393



코로나 시기, 이주노동자의 어려움과 차별(6)

잠재적 코로나 전파자 취급

이주민을 잠재적 바이러스 취급

이주민, 중국출신자에 대한 혐오 등 심각
 회사기숙사나 바깥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는 사례
 코로나라 부르며 조롱하는 사례(모욕죄 판결)
 코로나 확진자 증가를 빌미로 한, 이주노동자 대상 '전수조사 행정 명령' 의 남발

이주노동자만을 분리·구별하여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도록 강제한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명령에 대해 외국인에 대한 차별적 조치라고 판단하면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 및 광역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인권의 원칙에 기반하여 비차별적으로 방역정책을 수립·시행할 것을 권고 (국가인권위, 2021.3.22)



③ 일상생활에서 차별·혐오 경험 유형별 분류 (74명 응답)

장소	차별·혐오 유형	빈도
대중시설 (대중교통, 식당, 거리, 약국, 도서관)	시선	19
	피할	15
	과격한 혐오차별 발언(비난, 호통, 고함)	12
	입장 금지	11
	코로나 원인, 바이러스 취급	9
	감염 우려 표현	4
	꽃아냄	2
	잔소리	2
	부정적 태도	2
	마스크 구하지 못해 차별 겪음	2
인터넷	희잡을 벗김	1
	소근담	1
직장	불친절	1
	부정적 기술 (외국인 후임)	4
의료기관	직장 내 차별	5
	구직 차별	2
	접수 거부	1

코로나19와 이주민인권 모니터링 결과보고 (국가인권위, 2020)



그러나, 보건의로 전문가들이 지적하듯이, 집단감염 발병의 근본 원인은 밀집·밀접·밀폐로 감염에 취약한 노동조건과 열악한 주거환경이지 그곳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의 극적에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업장에서 감염 확산을 방지하고 노동자들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해야 할 조치는, 감염에 취약한 노동조건과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체류자격과 무관하게 자발적으로 진단검사를 받을 수 있고, 증상이 있는 경우 일자리를 잃을 것이라 두려움 없이 설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지원하는 것입니다.
(서울대학교, 서울시에 외국인 노동자 코로나19 진단검사 행정명령 철회 요청 보도자료 중 서울대인권센터 의견서, 2020.3.18)

“행정명령은 차별적이고 지나친 행위”, “EU 의장국 포르투갈 대사관은 EU 대표부와 함께 모든 EU 회원국과 노르웨이, 스위스, 영국을 대신해 한국 정부와 해당 지방정부에 이와 같은 견해를 서면으로 전달”(독일대사관). 영국대사관은 직접 국가인권위에 차별로 문제제기 유럽연합 대사들은 외교부를 찾아가 인종차별 항의 서한 전달

정세균 총리는 서울시 행정명령이 인권 침해와 차별 논란이 벌어진 점에 대해 유감 표명. "이번 일을 교훈 삼아 수요자 입장에서 감수성을 가지고 방역 조치를 시행하겠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서울시에 행정명령 취소 요청. 이주노동자만을 특정한 "선별검사를 시행할 때 해당 사업장의 위험도나 혹은 발생현황, 근무형태 등을 고려해서 차별이나 인권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히 주의해 조정해 줄 것을 19일 일제 요청" 그러나 각 지자체별로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음.

2021년 8월 21일

외국인 일용근로자 진단검사 행정명령

도내 일부 농수어업 및 산업단지에서 근무하고 있는 외국인일용근로자의 코로나19 다수 확산에 따라 지역차별 확산 차단 및 전세계 예방 조치를 위하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49조, 제49조의2에 따라 아래와 같이 긴급 행정명령을 발령합니다.

2021년 8월 21일
강 권도 지사

1. 행정명령 대상

- 가. 도내 외국인 일용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
 - 제조업, 건설업, 농업, 어업, 축산업 등 사업장에서 외국인 일용근로자를 고용하여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주(대표자)
 - * 외국인 일용근로자: 10일 이하 일일위 또는 주일위 직원

2. 행정명령 내용

- 가. 기간: 2021. 8. 21 ~ 8. 27(1주일)
- 나. 제 1의 가. 행정명령 대상자는 국제 공항 코관소 등 비행편으로에서 고용하고 있는 외국인 일용근로자와 이와 같은 장소에서 일하는 내국인 근로자에 대하여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반드시 조치하여야 합니다.

2021년 8월 21일

내외국인 일용근로자 고용시 코로나19 진단검사 실시 행정명령 고시

도내 일부 농수어업 지역 및 산업단지에서 근무하고 있는 내외국인 근로자의 코로나19 다수 확산에 따라 이에 대한 지역차별 확산 차단 및 전세계 예방조치를 위하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49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긴급 행정명령을 발령합니다.

2021년 8월 21일
전라북도 지사

1. 행정명령 대상

- 가. 도내 내외국인 일용근로자를 고용하는 자 및 인력을 공급하는 인력사무소 사업주(대표자)
 - 제조업, 건설업, 농업, 어업, 축산업 등 사업장에서 내외국인 일용근로자를 고용하여 사업을 운영하는 자 및 인력을 공급하는 인력사무소 사업주(대표자)

2. 행정명령 내용

- 가. 기간: 2021. 8. 21 ~ 8. 30
- 나. 제 1의 가. 행정명령 대상자는 고용하고자 하는 내외국인 일용근로자에 대하여 보건소 등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도록 조치하여야 합니다. (그런 전 2일 이내 진단검사 결과 확인 후 업무 중단. 단, 여행이 어려운 경우 해당 지역 보건소에 문의하여 협의)

국내발생 이주민 확진자 수는 2020년 11월 정도까지 매우 적었음. 이는 이주노동자가 장시간 고강도노동, 휴일이 적고 사회활동이 많지 않아서 사실상 '사회적 격리상태' 였기 때문임.

그러나 2020년 12월부터 3차 유행이 지역 사회 감염으로 확대되면서, 영향을 받기 시작.

밀집, 밀폐, 밀접의 열악한 노동 및 주거환경이 근본 문제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개선대책은 별로 없고 확진자 증가 이유로 지자체별로 색출식 행정명령이 진행되는 문제와, 이로 인한 차별과 낙인

구분	외국인		
	확진자수		사망자수
	해외유입	국내발생	전체
2020년 1월	1	0	0
2020년 2월	4	26	1
2020년 3월	35	82	0
2020년 4월	58	20	0
2020년 5월	61	19	0
2020년 6월	196	46	0
2020년 7월	449	11	0
2020년 8월	226	78	1
2020년 9월	249	61	0
2020년 10월	362	67	0
2020년 11월	490	122	0
2020년 12월	370	781	4
2021년 1월	414	748	4
2021년 2월	383	1,111	2
2021년 3월	288	1,398	6
2021년 4월	381	661	0
2021년 5월	375	1,260	0
2021년 6월	409	940	0
2021년 7월	882	2,943	2



다문화 관련, 코로나 이전 긍정적 단어 비중이 부정적 단어의 약 5배에 달했으나, 코로나 이후 긍정 단어 58.4%, 부정단어 41.6%
 거부감 관련 단어는 코로나 이전 5.93%였으나 코로나 이후에 21.05%로 증가

다문화 이슈 관련, '호감'은 2019년 51.5%에서 2020년 38.2%로, 거부감은 9.7%에서 19.3%로, 두려움은 1.1%에서 2.1%로 변화
 (최강화, 텍스트마이닝을 통한 코로나발생 전후 시기의 다문화에 대한 인식변화)

위해 日報

사회 > 사회 일반

"X한국, 도끼 들자"...재난지원금 못 받은 조선족 반응

2021년 7월 14일

2021.07.14 10:00

"재난지원금 안 주냐? 세금 적게 냈다, 보훈료 적게 냈다? X같은 한국 정부", "X한국이 그렇지 뭐, 나라가 자란만큼 봉살이거?"

코로나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한 국내 거주 조선족-중국인들이 거센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13일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재난지원금 못 받은 중국 동료의 커뮤니티 글'이라는 게시물이 올라왔다. 국내 거주 조선족들의 커뮤니티를 접한 것으로 보인다.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한 이들이 거친 욕설과 함께 불만을 표출하는 내용이 다.





코로나 시기, 이주노동자의 어려움과 차별(7)

백신접종, 미등록 이주민

미등록 이주민 체류자격 부여 문제

-39만 명에 달하는 미등록 이주민들은 사실상 방역체계에서 제외되어 있음. 또한 코로나 위기 상황에서 어떠한 보호도 받지 못하고 있음. 미등록 이주민 체류자격 부여 필요

-특히 방역을 위한 백신접종에 있어서도 미등록 이주민들을 포괄하기 위한 정책적 실행 노력이 부족한 상황임. 보건소별로 임시관리번호를 부여해서 예약과 접종을 할 수 있다고 하지만, 보건소마다 상황이 다르고 적절한 통역 제공이나 당사자들에게 가닿는 홍보 등이 미흡함.

-백신접종 예약사이트도 한글로만 되어 있어서, 이주노동자들이 사업장 내 한국인 동료나 지인, 지원단체 등의 도움을 얻어야만 예약이 가능했음.

프랑스, 코로나 필수 업무 수행한 외국인 1만 2천 명에 시민권 부여, 태국 미등록 이주노동자 합법화 추진, 이탈리아는 농업과 돌봄 영역 미등록 노동자에게 체류자격 부여



18~49세 외국인주민, 코로나19 백신접종 예약하세요!

내·외국인 구별 없이 동일한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사전예약이 진행됩니다!

● 사전예약기간 8.19(목) 20:00 ~ 9.18(토) 18:00 (접종시기 : 8.26~9.30)

● 대상별 예약방법

- **등록 외국인** : 온라인 또는 전화 예약
 - 온라인 :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전예약시스템(<http://ncv.kdca.go.kr>)
 - 전화 : 1339 또는 코로나19 예방접종 자치구별 콜센터
- **외국인 등록번호가 없는 외국인(불법체류 외국인 포함) 등** : 보건소 방문 (사전예약) 여권을 소지하고 보건소 방문 후 임시관리번호 발급 (예약일수) 보건소 현장 예약 또는 코로나19 예방접종 자치구별 콜센터

* 예방 목적 등으로 현장을 방문한 단기체류자(90일 이하 체류)는 백신 접종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비등록이주민의 경우에도 콜센터 예약일선에서 혼용되지 않습니다.

문의 : 02-120 / 서울공로법률센터 홈페이지

국내 체류 외국인, 코로나19 백신 접종 안내

내·외국인 구별 없이 동일한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사전예약이 진행됩니다! 다만의 접종 대상자 및 예약방법을 확인하시어 코로나19 백신접종을 예약해주세요

* 본인만 해당하는 백신 사전예약 시기는 질병관리청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계획'을 참고

① 접종대상자 및 예약방법

① 외국인등록번호 없는 외국인 중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계획'에 따른 접종 순서대로 백신 접종을 신청할 수 있으며, 온라인이나 전화를 통해 예약을 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예약 시 대상자가 아니라고 표시되는 경우, 지역 보건소에 방문하여 대상자 등록 후 예약할 수 있습니다.

② 예약방법

☎ 온라인 예약 - 본인 및 대리 예약 신청 가능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전예약시스템(<http://ncv2.kdca.go.kr>) 누리집에 접속하여 예약

☎ 전화 예약 - 본인 및 대리 예약 신청 가능
 '1339' 질병관리청 콜센터 또는 '코로나19 예방접종 누리집' '예방접종 현황' 메뉴를 클릭한 상태에서 '코로나19 예방접종 전화예약 운영현황' 클릭 후 지자체별 예약상담 전화번호 확인

② 외국인 등록번호가 없는 외국인(불법체류 외국인 포함) 등은 보건소에 방문하여 여권으로 임시관리번호를 발급받은 후 예약 접수 할 수 있습니다. 임시관리번호 발급 후에는 온라인이나 전화를 통한 예약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리 예약 가능)

* 유류기간이 지난 여권, 체류기간이 만료된 외국인등록증, 주민등록 발급 신청중일시, 고종수가 외국인의 인계사항을 게시하는 경우에도 임시관리번호 발급 가능

③ 예방 목적 등으로 현장을 방문한 단기체류자(90일 이하 체류)는 백신 접종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알 려 줘

- 신분정보는 백신 접종 목적으로만 이용되며, 정보유출 근절목적으로 지역별 출입국·외국인사무처 홈페이지에 공유되지 않습니다.
- 건강보험 미가입자는 보건소 또는 예방접종센터에서 접종 가능합니다. (의료기관에서의 접종은 불가)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질병관리청 코로나19 예방접종 (<https://ncv.kdca.go.kr>) 누리집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병관리청



코로나 시기, 이주노동자의 상황과 과제

- 노동권, 의료접근권 및 건강권, 정보접근권 등 모든 부분에 있어서 재난시기에 취약성이 커지고 차별과 격차 확대
- 임금, 소득, 근로조건, 방역 및 재난지원, 체류 등 불안정과 배제 증가
- 사회적 관계 위축, 부정적 인식 확대, 스트레스 증가, 혐오 확대
- 제도적 뒷받침과 지원 정책, 노동/주거/의료 등 정책개선 절실

- 국내에서 취업활동 기간 연장, 재입국특례자, 신규노동자 점진적 입국
- 사후적 확진자 검사 일변도가 아니라, 근로조건과 주거환경 근본 개선
- 백신접종을 확대를 위한 획기적 정책 필요
- 재난지원금 평등 지원, 고용보험 의무가입화로 실업급여 적용, 건강보험 차별폐지
- 이주민에 대한 혐오표현과 차별행위 제재방안 강구 (차별금지법)
- 미등록 체류자에 대한 체류자격 부여
- 임금체불, 산재 문제에 대한 특단의 대책 필요
- 이주노동자 목소리 모아내기, 노조조직화 확대 지원 연대운동 강화



감사합니다!

2021 민주노총 수도권
이주노동자 상담법률학교

•
•
•
•
•
•
•
•
•

|| 2강 ||

최근 이주노동자 상담사례 특징과 해설

류지호
의정부이주노동자센터 상담팀장

고용허가제와 이주노동자 상담

의정부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류지호

2021년 주요 변경사항

재입국특례제도

- ✓ 대상 사업장 확대(2020.1.1) : 서비스업 추가 (2020.1.1)
- ✓ 재입국특례 입국제한 기간 단축(2021.10.14) : 3개월 → 1개월
- ✓ 재입국특례 외국인노동자 조건 완화(2021.10.14)
 - 외국인근로자 책임이 아닌 사유(고시내용) 뿐 아니라 자율합의나 상해 등의 변경 횟수 포함 사유 시에도 일부 가능(노동부장관 고시 예정)
 - 외국인근로자 책임이 아닌 사유(고시내용) 경우 마지막 사업장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이어도 권익보호협의회 결정 통해 허용

H-2 취업 허용업종 추가

- ✓ 추가업종 : 광업, 물류터미널 운영업, 과실·채소 등 도매업, 축산물 운반업
- ✓ 서비스업(2021.6.22), 광업(2021.10.14)

2021년 주요 변경사항

외국인노동자 주거환경 개선 지침 (2021.1.6)

- ✓ 비닐하우스(비닐하우스 내 가설건축물 포함) 기숙사 제공 시 고용허가 불허
- ✓ 가설건축물(컨테이너 등), 사업장 내 건물을 기숙사로 제공 시 거주용도 확인 (신고필증, 건축물대장 제출)

외국인근로자 책임이 아닌 사업장변경 사유 개정 (2021.4.1)

- ✓ 농한기, 금어기 권고 퇴사(신설)
- ✓ 임금체불, 지급지연(확대)
- ✓ 5일 이상 근로수령 거부(신설)
- ✓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신설)
- ✓ 성폭행 발생 시 긴급사업장변경(대상 확대)
- ✓ 비닐하우스 또는 농지법 위반 가설건축물 기숙사 제공(개정)
- ✓ 사업주의 전용보험, 사회보험 미가입 및 체납(신설)

2021년 주요 변경사항

재고용 신청 기간

- ✓ 기존 60일 전 → 90일 전 (2021.1.1)

취업활동기간 1년 일괄 연장

- ✓ 2021.4.13~12.31 중 취업활동기간 만료 E-9, H-2 노동자 (2021.4.13)

임금체불 보증보험 한도 상향

- ✓ 기존 200만원 → 400만원
- ✓ 2021.2.1 계약자부터 적용

고용보험 당연가입 단계적 적용(사업주부담금,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

- ✓ 2021년 30인 이상 사업장, 2022년 10인 이상 사업장, 2023년 모든 사업장

취업활동기간 연장 미 대상자 구제사례

필리핀 노동자는 4개월 동안 임금이 체불되어 2월10일 퇴사하여
출국예정신고를 함(취업활동기간 2월까지), 임금체불로 노동청 조사 중이고,
취업활동기간 일괄 연장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도움 요청함

- ✓ 노동자는 하이코리아를 통해 체류기간 50일 연장을 확인해 당연히
취업활동기간 연장 대상자로 판단하고 있었음
- ✓ 확인결과, 출국예정 신고자로 취업활동기간 50일 연장 대상자가 아니었고
협조를 통해 출국예정신고를 취소해 취업활동기간 50일 연장 대상자 포함
- ✓ 그러나 1개월 이내 사업장변경 신청을 하지 않아 취업활동 제한, 결국
권익보호협의회를 통해 사업장변경 허가를 받았으나
- ✓ 퇴사일이 취업활동기간만료 3개월 전으로 또 다시 연장 대상이 될 수 없어
결국 사업주를 설득해 고용변동신고를 정정, 연장대상자에 포함됨
- 위 사례로 고용센터, 고용노동부에 구제 요청, 1년 연장 확대됨

취업활동기간 1년 연장 상담은 아직도...

- ✓ 방글라데시 노동자는 재직 중인 사업장에서 취업활동기간 1년이 연장된
것으로 알고 있었으나 사업주가 근로계약을 제출하지 않은 것을 확인함
 - 고용센터 확인하니 사측이 고용허가연장신청을 해 일단 취업활동기간
연장을 해주었는데 근로계약을 제출하지 않아 독촉하고 있었다고 함
 - 결국 센터에서도 함께 독촉하여 근로계약서 제출함
- ✓ 몽골 노동자는 취업활동기간이 연장된 것으로 알고 있었으나 출입국에서
출국통지서를 받음
 - 고용센터에 확인하니 사측에서 근로계약 갱신 및 고용허가연장신청을
하지 않았고 사업장변경신청기간도 1개월이 지나 구제가 어렵다고 함
 - 권익위원회 민원 등을 검토하던 중 노동자가 귀국하겠다고 사측에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함
 - 다행히 사측이 과실을 인정하고 노동자와 4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합의
하여 수령 후 출국함

취업활동기간 1년 연장 상담은 아직도...(계속)

- ✓ 네팔 노동자는 취업활동기간 1년이 연장되면 사업장변경 횟수도 1회가 더 늘어난다고 판단해 관리자와 갈등을 빚고 있던 사업장을 퇴사함
 - 고용센터는 이미 횟수를 다 사용해 더 이상 사업장변경이 불가하다고 안내함
 - 사업주에게 고용변동신고 취소 등 조치를 요청하고 했으나 완강하게 거부함
 - 노동자가 현재 질병 치료 중임을 고려해 일단 부당해고구제신청 및 출입국에 체류기간 연장을 협의할 예정
- * 사업장변경 횟수를 다 사용한 경우에도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사업장변경이 가능해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있어 같은 사례 종종 발생

고용허가제 소개

고용허가제

- 고용허가제는 정부가 내국인 고용이 어려운 중소기업이 합법적으로 비전문 외국인노동자를 고용할 수 있도록 허가해 주는 제도
- 원활한 인력수급과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법 제1조)

고용허가제 도입배경

- 1993년 산업연수생제도 도입 : 송출비리(민간 운영), 노동자성 미인정, 인권문제, 미등록자 급증
- 2003년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정
- 2004년 8월 17일 고용허가제 시행
- 2007년 산업연수생제 폐지, 고용허가제로 통합

고용허가제 소개

고용허가제의 원칙

국내 노동시장 잠식을 방지, 공공부분이 직접관리, 시장수요에 맞는 외국인력 선발지향, 국내 노동관계법 적용 등 차별금지, 정주화 방지, 지정알선 금지

외국인력정책위원회(법 제4조, 5조)

- 고용허가제 노동자 관련 기본계획 수립, 도입 업종 및 규모, 송출국가 지정, 외국인노동자 권익보호 사항 등을 심의 의결
- 매년 외국인노동자 도입계획 등을 심의, 의결해 공표

외국인노동자의 법적지위

노동관계법 및 사회보험 적용, 차별금지, 다만 취업기간 제한(단기순환제도)

고용허가제 소개

송출국가 현황(16개국): 국가간 MOU체결

- 2004년 : 인도네시아, 베트남, 태국, 필리핀, 스리랑카, 몽골
- 2006년 : 우즈베키스탄, 파키스탄, 중국, 캄보디아
- 2007년 : 방글라데시, 네팔, 미얀마, 키르기스스탄, 동티모르
- 2015년 : 라오스

소수업종 특화국가 지정 운영

- 건설업 : 베트남, 태국, 캄보디아, 미얀마, 스리랑카, 중국
- 농축산업 : 네팔, 베트남, 태국, 캄보디아, 미얀마, 중국
- 어업 : 인도네시아, 베트남, 동티모르, 스리랑카, 중국
- 서비스업 : 몽골, 우즈베키스탄, 중국



외국인노동자 선발

한국어시험(법 제7조제2항)

- 응시자격 : 만18세~39세 이하(필리핀 만 38세이하)
- 객관식 시험 40문항(듣기 20문항, 읽기 20문항), 100점 만점
- 합격기준 : 40점 이상 취득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

기능수준평가(법 제7조제4항, 5항)

- 응시자격 : 한국어시험 합격자
- 평가내용 : 기초체력(30점), 면접(30점, 동영상 촬영), 업종별 기초기능(40점)

선발포인트 제도

- 한국어능력시험(1차 평가), 기능수준평가(2차 평가) 결과를 합산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 (2016년부터 적용, 2019년 16개국 전면 실시)

외국인 고용허가 요건 (시행령 제13조의4)

외국인 고용허용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 300인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원 이하
- 건설업 : 모든 건설공사
- 서비스업 : 건설폐기물처리업, 냉장냉동창고업(내륙위치), 서적 잡지 및 인쇄물 출판업, 음악 및 기타 오디오물 출판업
- 어업 : 연근해어업, 양식어업, 천일염 생산 및 암염 채취업
- 농축산업 : 작물재배업, 축산업, 작물재배 및 축산 관련 서비스업

내국인 구인노력 (법 제6조)

- 제조업, 건설업, 서비스업 : 14일, 예외 7일
- 농축산업, 어업 : 7일, 예외 3일
- 예외적용 : 워크넷 + 신문·방송·생활정보지 등을 통해 내국인 구인노력

외국인 고용허가 요건 (시행령 제13조의4)

내국인 고용조정 여부

- 내국인 구인신청 2개월 전부터 고용허가서 발급일까지 고용조정으로 내국인노동자를 이직시키지 않았을 것

임금체불 여부

- 내국인 구인신청 5개월 전부터 고용허가서 발급일까지 임금체불이 없을 것

고용, 산재보험 가입 및 기타요건

- 고용 및 산재보험 가입(미적용 사업장 제외)
- 고용 중인 외국인노동자의 출국만기보험, 보증보험 가입
- 외국인노동자 고용제한 사업장이 아닐 것

고용허가 취소사유

고용허가 취소사유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허가를 받은 경우
- 입국 전에 계약한 임금 또는 그 밖의 근로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 근로계약의 임금보다 30%이상 낮거나 최저임금 미만으로 낮아진 경우
- 임금체불 등 노동관계법 위반으로 근로계약유지가 어렵다고 인정된 경우
 - 상습적인 체불행위 : 3개월 이상 체불임금 누적
1회 체불기간이 30일 이상으로 연간 5회 이상
 - 강제근로 : 폭행, 협박, 감금 등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여 자유의사에 반하는 경우
 - 폭행 : 사용자가 폭행하여 전치 5주 이상의 상해를 입힌 경우

고용허가 제한사유

고용허가 제한사유

- 고용허가를 받지 않고 외국인을 고용한 경우(2년)
- 고용허가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1년)
- 외교법, 출입국법을 위반해 처벌 받은 경우(벌금 500만원 기준 1년, 3년)
- 외국인노동자 고용 후 6개월 내에 내국인(생산직)을 이직시킨 경우(1년)
-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장소 외에서 근로시킨 경우(1년)
- 신규 입국 외국인노동자 미인도(1년)

취업활동기간 및 재고용신청

최초 취업활동 및 근로계약기간

- 외국인노동자는 최초 취업활동기간으로 3년을 부여 받음(법 제18조)
- 고용주는 이 취업활동기간 내에서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법 제9조)
- * 근로계약기간1년⇒3년까지 확대 (2010년): 사업주에 대한 예속 강화

재고용 제도 (법 제18조의2)

- 재고용 신청 및 허가로 1년 10개월 동안 추가로 취업활동 가능(총 4년10개월)
- 3년 취업활동기간 만료 90일 전부터 7일 전 사업주 신청(만료일까지 가능)
 - 취업활동기간 만료일까지 근로계약 기간 1개월 이상 유지되어야 함
- 고용사업장이 외국인노동자 고용허가 요건을 충족해야 함

부당한 재고용 취소로 출국 상황에 놓인 사례

인도네시아 노동자는 지난 12월부터 불량공제로 50만원이 공제되고 있고 임금도 부족하다고 해 상담하는 과정에서 사측이 3년 취업활동기간 만료 전날에 재고용을 취소함

- ✓ 5월 8일이 3년 취업활동기간 만료일로 이미 3월에 재고용 신청 완료
- ✓ 불량공제가 계속되자 노동자의 요청으로 센터에서 5월 6일 사측에 조심스레 문의하며 법적인 내용 안내함
- ✓ 다음 날 사업주는 노동자에게 나가라고 한 후 재고용 신청을 취소함
- ✓ 확인하니 사업주가 고용센터에 억울함을 호소하며 취소하게 되었고 담당했던 고용센터 주무관에게 불량공제 등 임금체불 사실을 알림
- ✓ 당일 바로 임금체불 진정, 체류기간 문제로 사업장변경신청 후 구직등록 필증을 발급받아 출입국으로부터 3개월 체류기간을 연장받음
- ✓ 임금체불 사실이 확인되어 사업장변경 및 취업활동기간 1년 연장 대상으로 처리되어 전화위복이 되었으나 위험한 상황이었음

부당한 재고용 취소로 출국 상황에 놓인 사례(계속)

- 해당 노동자는 다행히 취업활동기간 1년 연장 대상자가 되어 현재 다른 사업장에 취업해 향후 재고용이 될 기회를 얻었으나
- 일반적인 경우 사측의 임금체불로 억울하게 재고용이 취소되었다 하더라도 현실적으로는 구제가능이 낮고 출국해야 하는 상황임
- 재입국특례신청이 가능했던 몽골 여성노동자가 성범죄 피해로 재입국특례 대상이 되지 못한 사건으로 재입국특례제도에 예외 사항이 포함된 것처럼,
- 재고용과정에서도 마찬가지로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향후에 관련 법률 개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재입국 제도

특별한국어시험 제도 : 6개월 후 재입국(지침으로 시행)

- 귀국하여 특별한국어시험에 응시해 합격하면 재입국할 수 있도록 한 제도
- 응시자격 : 재고용되어 일하다가 체류기간 내에 자진출국 한 자
- 연령제한 : 접수기간 첫날 기준 만39세 이하 (필리핀 만38세 이하)
- 출국 전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지정알선으로, 6개월 후 재입국 보장
- 응시업종 변경 가능하나 이전 사업장 지정알선 불가
- 지정알선인 경우 합격 시 고용센터 고용여부 안내, 25일 이내 고용신청
- 지정알선이 아닌 경우 구직자명부에 등록(다만, 신규보다 우선하여 알선)
- 재입국자는 입국 전 취업교육 면제, 입국 후 취업교육 이수 후 사업주 인계
- 2016년 까지 분기별 1회, 2017년 미 실시, 2018년 이후 반기 1회 실시

재입국 제도

재입국 특례제도(성실근로자제도) : 1개월 후 재입국 (법 제18조의4)

- 노동자 : 취업활동기간(4년 10개월) 동안에 사업장변경 없이 계속 근로한 자
 - 고시내용의 사업장변경인 경우 마지막 사업주와의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일 것
 - ※ 1년 미만 시 권익보호협의회에서 타당하다는 인정 필요(2021.10.14)
 - 변경횟수 포함 사업장변경인 경우 동일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 중분류)내에서 사업장을 변경했고 근속기간 등 장관고시 기준을 충족하고 마지막 사업주와의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일 것
- 대상업종 : 농축산업, 어업, 서비스업, 100인 미만의 제조업
- 대상자의 취업활동기간 만료일 3개월 전부터 7일전 신청(만료일까지 가능)
- 대상자는 신청일부터 1개월 이내 출국, 본국 도착 후 7일 이내 송출기관 신고, 입국 전, 후 취업교육 면제

<한국표준산업분류 중분류 : 재입국특례 허용업종>

업종명 (대분류)	코드	세부업종명(중분류)	코드	세부업종(중분류)
제조업	10	식료품 제조업	22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11	음료 제조업	23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12	담배 제조업	24	1차 금속 제조업
	13	섬유제품 제조업; 의복제외	25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외
	14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26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제조업
	15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27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16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제외	28	전기장비 제조업
	17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29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18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30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19	코르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31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20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 의약품 제외	32	가구 제조업
21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33	기타 제품 제조업	
농업	01	농업(작물재배업, 축산업, 작물재배 및 축산 관련 서비스업)		
어업	03	어업(연근해어업, 양식어업)		
	07	천일업 생산 및 암염 채취업		
서비스업	38	건설폐기물처리업	58	서적, 잡지 및 기타 인쇄물 출판업
	46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	59	음악 및 기타 오디오물 출판업
	52	냉장·냉동 창고업		

고용허가제 주요 신고사항 (법 제17조)

외국인근로자 고용변동신고 (시행령 제23조 1항)

- 외국인노동자가 사망한 경우
- 외국인노동자가 부상 등으로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 근로가 어려운 경우
- 정당한 절차 없이 5일 이상 결근하거나 그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이탈신고)
- 이주노동자와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경우(근로계약 기간 중 해지)
- 이주노동자가 사업주에게 사업장변경을 위해 서명을 요청하는 서류

사업장 정보변동 신고 (시행령 제23조 1항)

- 사업주 또는 사업장의 명칭이 변경된 경우(고용승계, 사업장정보)
- 사업장 합병으로 외국인노동자 허용인원을 초과하는 경우 고용승계로 고용은 가능하나, 재고용은 불가능
- 사업주의 변경 없이 근무 장소를 변경한 경우(사업장정보, 지사간 이동)

사업장변경

사업장변경 허용요건 (법 제25조 1항)

- 고용허가제(E-9)은 원칙적으로 **사업장변경 금지, 예외적 허용**
-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로 근로계약기간 중 **근로계약을 해지**하려고 하거나, **근로계약이 만료된 후 갱신을 거절**하고자 하는 경우
- 당사자간의 자율합의에 의한 근로계약 해지 포함
- 휴업, 폐업, 고용허가의 취소, 고용의 제한, 기숙사 요건 위반, 사용자의 근로조건 위반 또는 부당한 처우 등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경우**
- **상해 등**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하기 어려우나 다른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의 근무가 가능한 경우(시행령 제30조제1항)

사업장변경

사업장변경절차

- 사업주의 고용변동신고가 우선 필요(퇴사 후 14일 이내)
- 외국인노동자 **사업장변경신고** : 퇴사 후 **1개월 이내**
- **구직등록 및 취업알선** : 구직기간 **3개월**
- 외국인 구인 사업장에 구직 중인 외국인 알선 및 문자안내(유효기간 3일)
- 사업장 및 외국인노동자 간의 면접과정을 통해 근로계약체결
- 고용센터에 근로계약서 제출 및 고용허가를 받아야 함
- 출입국관리사무소에 **근무처변경신고** 후 **근로 시작**
- **1개월 이내 사업장변경 신고, 3개월 이내 근무처변경신고를 하지 않으면 출국**
- 산재, 질병, 임신/출산 등 구직활동이 어려운 사유 발생시 연장가능

질병으로 인한 사업장변경

스리랑카 노동자가 사업장에서 화학물질로 인한 결막염, 각종 피부염을 호소하면 사업장변경을 요청함

- ✓ 사업장에 연락해 노동자의 상담내용을 안내하고 업무조정 및 사업장변경을 상의하고자 했으나 사측은 사업장에 문제가 없다며 거부함
- ✓ 노동자에게 안과 및 피부과에서 진료를 받고 소견서를 발급받도록 안내함
- ✓ 이후 해당 소견서를 가지고 서울의료원 '직업환경의학과'에 진단을 받아 업무 관련성이 높으니 즉시 작업전환이 필요하다는 진단서를 받음
- ✓ 이에 고용센터에 사업장변경을 요청하였으나 직권변경에 부담을 느껴 사업주를 설득해 사업장변경을 하도록 함
- 질병 및 상해 등으로 사업장변경은 매우 어려움, 고용센터에서 자체 판단해 직권으로 사업장변경 처리하는 것에 소극적이기 때문
- 사업장변경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병원 진단서를 근거로 사업장에 담당업무 변경을 요청하면서 장기간의 상담을 통해 사업주 및 고용센터와의 협조를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 제도개선도 필요

구직기간 초과로 출국조치

몽골 노동자가 구직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다행히 알선 받은 사업장에 취업하게 됨, 그런데 사업주가 고용허가신청을 지체해 구직기간이 초과되어 출국해야 하는 상황이 됨

- ✓ 사측에 확인하니 면접을 통해 고용하기로 하고 채용여부에 대해 팩스로 고용센터에 알렸으나 이후 근로계약서 제출 등 고용허가신청을 하지 않음
- ✓ 담당자가 관련 제도를 몰라 발생한 일이나 고용센터는 구제불가 안내
- ✓ 결국 국민권익위원회에 진정하여 현재 진행 중이나 어렵겠다고 안내받음
- 구직기간이 3개월이 길다고 생각해 이 기간 중에 고국을 다녀오고 자신이 희망하는 사업장에 취업하고자 알선을 기다리다 보면 종종 구직기간 내에 취업하지 못하는 노동자들이 발생함
- 고용센터마다 상이하나 알선 후 사측에서 고용의사를 밝히면 일주일 내에 고용센터 방문해 근로계약서 제출 후 고용허가를 내주는 경우 있음
- 다만 위 사례처럼 기간이 오래 지난 경우 구제가 어려움, 사측에만 맡기지 말고 본인이 직접 챙기는 것도 중요

외국인근로자 책임이 아닌 사업장변경 사유

(고용노동부고시 제2021 - 30호, 2021.4.1.)

<제2조 휴업, 폐업>

✓ 장기간의 휴업 및 휴직

- 휴업 및 휴직으로 인한 임금감소 입증 필요
- 평균임금의 70% 미만 2개월, 90% 미만 4개월 (4개월 경과 전 신청)

✓ 사업장의 폐업, 도산, 공사종료, 사업완료 및 중단 등

✓ 경영상 필요에 의한 해고, 입국 후 취업교육 후 외국인 미인도

✓ 농한기, 금여기로 임금지급이 어렵거나 권고사직 퇴사(노동자 귀책사유X)

<제3조 고용허가 취소, 제한>

✓ 고용허가 취소, 제한 처분을 받은 경우

- 제한사유 : 근로계약에 명시된 사업장 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게 한 경우

휴업으로 인한 사업장변경

방글라데시 노동자가 휴업으로 임금이 감소했고 체불임금도 있다며
임금체불 구제 및 사업장변경을 요청함

- ✓ 사측 통화 시, 5인 미만 사업장으로 휴업수당이 없고 사업장변경도 거부
- ✓ 노동자가 휴업수당 지급 등이 포함된 계약서를 제시
- ✓ 노동청에 임금체불 등으로 진정하고 고용센터에 사업장변경 요청함
- ✓ 사업주가 노동청 출석 전에 체불임금을 지급하여 진정취하함
- ✓ 고용센터에서 휴업으로 인한 임금감소를 확인하여 사업장 변경 처리됨
- 휴업으로 사업장변경 상담인 경우 고시내용의 사업장변경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 확인이 필요
- 아직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면 조금하게 사측과 다투지 말고 향후 요건이 충족 되었을 때 사업장변경을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
- 다만 휴업이 잦다면, 휴업수당 미지급 및 임금의 지급지연 가능성도 있어 함께 살펴보며 사업장변경 상담을 진행

출장근무 확인으로 이탈에서 사업장변경으로

우즈베키스탄 노동자가 근무지가 변경된 근무지에 불만을 갖고 출근하지 않자 사측에서 이탈신고를 함

- ✓ 노동자가 근무지 변경에 불만을 갖고 있음을 사측에 안내하여 퇴사를 요청하였으나 거부하고 무단결근으로 이탈신고를 함
- ✓ 상담과정에서 노동자가 충청도 등 타지에서 일했던 사실을 확인하고 숙박영수증, 주유영수증 등을 확보하여 고용센터에 진정함
- ✓ 이후 SNS에 올린 사진자료와 동영상을 추가로 제출하여 근무지 외에서 일을 시킨 것이 입증됨에 따라 사업장변경 됨
- 출장이 잦다면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사업장 외에서 근로를 시킨 것으로 판단해 사업장은 고용제한 조치를 받고 노동자는 사업장변경이 가능
- 그러나 2019년 고용노동부는 제조 사업장이 제품 설치까지 하는 경우, 제작이 주된 작업이고 부수적으로 설치가 불가피하며 설치공사를 포함하여 계약이 체결된 경우 출장근무를 허용(2019.9.30 시행)
- 일반적인 경우는 사진 등 입증자료를 충분히 확보하여 고용센터 진정

외국인노동자 책임이 아닌 사업장변경

<제4조 근로조건 위반>

- ✓ 임금체불 또는 지급지연
 - 월 임금의 30%이상 2개월(2회), 10%이상 4개월(4회) (4개월 경과 전 신청)
 - 원칙적으로 고용노동부진정 및 확인필요(지급지연은 통장내역 확인가능)
- ✓ 최저임금법 위반
 - ✓ 근로조건 저하 -임금과 근로시간이 20%이상 저하, 1년 중 2개월 이상
 - ✓ 근로조건 변경 - 노동자 동의 없이 근로시간대를 2시간이상 앞당기거나 늦춘 경우 1년 중 1개월 이상 지속
- ✓ 산재발생 : 사업장내 중대재해 발생, 3개월 이상 요양의 산재피해 노동자
 - 3개월 미만인 경우 산재의 직접적인 원인에 대해 예방조치 등 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법 상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임금 지급지연으로 인한 사업장변경

네팔 노동자가 1년 6개월 근무하는 동안 매월 임금이 1개월 가까이 지급지연 되었고 현재도 지난 달 임금을 받지 못한 상태라며 사업장변경을 요청함

- ✓ 사업주는 경영상 어려움으로 지급이 늦어졌다면서도 사업장변경은 거부
- ✓ 노동청에 임금체불 및 정기불원칙 위반으로 진정하고 고용센터에도 임금지급지연으로 사업장변경 요청함
- ✓ 노동청 출석 조사 과정에서 사업주가 지급을 약속하고 계속근로를 설득했으나 노동자가 거부하여 고용센터는 '경영상의 이유'로 고용변동 신고서를 제출 받아 사업장변경 됨
- 이전에 지급지연 및 체불 2개월이 기간이나 횟수냐를 두고 고용센터마다 해석이 달라 상담이 어려웠던 적이 있었으나 이번 고시는 둘 다 포함됨
- 임금지급지연은 급여통장내역 등 지급지연 입증자료를 정리해 제출해도 사업장변경이 가능하나 임금체불은 원칙적으로 체불확인서가 필요

중대재해 발생으로 인한 사업장변경

미얀마 노동자가 산재로 사망한 사건이 발생해 센터에서 트라우마 상담 시 통역을 제공함, 당시 노동자들이 불안해 사업장을 변경하고 싶다고 하면서 센터에 내방하여 사업장변경 상담을 요청함

- ✓ 센터에서는 중대재해가 발생한 것으로 사업장변경이 가능하다고 안내함
- ✓ 이에 노동자들이 사업장변경을 요청하여 고용센터에 진정함
- ✓ 이후 사업주가 노동자들에게 근로조건 향상과 사고가 난 공정을 중단하는 등 설득을 해 사업장변경 진정취하서를 제출함
- ✓ 노동자들은 향상된 근로조건에 만족해 상담 종료
- 이전까지는 산업재해로 인한 사업장변경이 거의 불가능 했으나 최소한 중대재해에 한해 사업장변경이 가능해 짐

외국인노동자 책임이 아닌 사업장변경

<제5조 부당한 처우 등>

- ✓ 사용자 등으로부터 성폭행 피해를 당한 경우 긴급 사업장변경(3일 이내)
- ✓ 사용자로부터 성희롱, 성폭력, 폭행, 상습적 폭언 등으로 계속 근로 어려움
 - 사용자 관리범위 내 직장동료, 사업주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도 포함
- ✓ 사용자로부터 국적, 종교, 성별, 신체장애 등을 이유로 부당한 차별을 받아 계속 근로 어려움
- ✓ 주거시설 위반 : 비닐하우스 또는 건축법 제20조, 농지법 제34조 위반 가건물
 - 다만, 재고용허가는 노동자 동의 시 6개월 이행기간 부여(신축은 최대 1년)
 - 이 외에는 사업장변경 허용
- ✓ 근로제공 5일 이상 거부 : 임금 또는 휴업수당 미지급
- ✓ 전용보험 및 사회보험 미가입 또는 3개월 체납 : 시정기간내 미이행 시

외국인노동자 책임이 아닌 사업장변경

<제5조의2 기숙사의 제공 등>

- ✓ 기숙사 시설기준 미달(제5조의2) : 근기법 시행령 제55조~제55조의2 위반으로 시정요구 받은 후 불이행
- ✓ 기숙사 정보와 실제 내용이 상이 : 시정 기간 내 미이행 시
 - 해당 노동자의 근로계약 당시 기숙사 정보(이후 변경 사항 포함)

<권익보호협의회의 사업장변경 허용 인정>

- ✓ 주장 불일치 및 입증자료 부족으로 판단 곤란, 고시의 변경사유에 준하는 경우

사업주의 성추행으로 사업장변경

태국 노동자는 사업주가 자신을 성추행했다며 센터 태국 상담사에게 전화로 상담을 요청하였고 이후 내방하여 사업장변경을 요청함

- ✓ 노동자는 최근에 일하다가 갑자기 기계가 멈춰 사업주에게 보고했더니 기계를 고치고 나서 엉덩이를 쳤다고 함, 이전에도 비슷한 상황에서 자신을 뒤에서 안은 적도 있었다고 함
- ✓ 남자친구와 주고 받은 메시지를 캡처해 번역 후 경찰서에 신고함
- ✓ 이후 사업주가 합의를 요청해 200만원을 지급받고 경영상의 이유로 퇴사
- ✓ 사업주는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되었음
- 임시사업장변경 : 진정·소송 등이 진행 중으로 사업장변경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사업장변경 사유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신청가능
-임시사업장변경이 되면 고용센터 알선을 받아 취업가능하나, 사업장변경 후 허위나 거짓(협의 없음)으로 판정이 난 경우 출국조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 확실한 경우에만 신청
-또한 신청하면 무조건 처리해 주는 것이 아니라 고용센터가 재량권을 가지고 판단해 처리 : 주로 성추행, 성희롱, 폭행의 경우에 신청

사업주의 상습적인 폭언으로 사업장변경

스리랑카 노동자는 사업주가 수시로 폭언과 욕설을 한다며 사업장변경을 요청함 (당시 산재신청도 같이 상담)

- ✓ 노동자의 산재사고(경도 화상)에 대해서는 병원 산재담당자를 통해 산재신청
- ✓ 상습적인 폭언은 여러 차례 녹음을 해 오도록 안내하여 증거 확보함
- ✓ 1개월 동안 녹음한 20여개의 파일을 통해 욕설과 폭언 확인 및 고용센터에 사업장 변경을 요청함
- ✓ 고용센터에서는 상습적인 폭언을 인정했으나 사측이 완강하게 나서자 '경영상의 이유'로 신고할 것을 권유하여 사업장변경 처리됨
- 상습적인 폭언은 위 사례와 같이 오랜 기간 많은 자료를 확보하지 않으면 사업장변경이 어려움

기숙사 요건 위반으로 사업장변경

베트남 노동자가 기숙사가 열악하다며 사업장 변경을 요청함

- ✓ 노동자에게 기숙사 시설을 사진 찍어 오도록 하였고 기숙사가 농지 위 비닐하우스 내 가설건축물로 화장실 및 욕실, 주방 등 시설이 매우 열악한 상태였음
- ✓ 해당 사진자료를 첨부하여 고용센터에 사업장변경을 요청함
- ✓ 고용센터에서 기숙사 확인 후 사업장변경 처리됨
- 위 사례는 '주거환경 개선 지침'에 따라 사업장변경이 쉽게 이루어 짐
- 최근에는 주거시설표와 실제 주거환경을 비교하여 시정을 요구하기도 함
- 또한 7월 부터는 모든 업종에 불법가설건축물에 대해 고용허가가 불허되어 이에 따른 사업장변경 상담도 진행
- 제공된 기숙사 주거가 가능한 건축물인지 건축물대장을 확인해야 하는데 고용센터에 이를 확인해 줄 것을 요청하는 민원을 제기하기도 하였음

E-9 이주노동자 전용보험

출국만기보험 : 사업주 가입 (법 제13조)

- 퇴직금을 담보하기 위해 사업주가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보험(삼성화재)
- 표준근로계약서 상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매월 8.3%를 납입
- 2014년 7월1일부터 출국 후 14일 이내 수령하도록 관련 법령이 변경됨
- 보험수령금액이 법정퇴직금 적은 경우 그 차액을 사업주가 지급해야 함
- 시행령 제21조제3항 (퇴직금차액=법정퇴직금-출국만기보험예상수령액)

임금체불 보증보험 : 사업주 가입 (법 제23조제1항)

- 임금체불에 대비하여 사업주가 서울보증보험사에 가입하는 보험
- 임금체불 시 고용노동청에 진정하여 체불금품확인서를 발급받아 신청
- 명의상 사업주와 실재 사업주가 다른 경우 확인해야 함
- 최대 200만원 보장(2021. 2. 1. 이후 계약 시 400만원), 소멸시효 2년

E-9 이주노동자 전용보험

상해보험 : 노동자 가입 (법 제23조제2항)

- 질병, 상해로 인해 장애나 사망할 경우를 대비하여 가입하는 보험(삼성화재)
- 상해사망/장해 최대 3천만원, 질병사망/장해는 최대 1천5백만원(산재제외)
- 재고용, 재입국 시에 다시 가입해야 함
- 장애로 인해 보험을 받기는 매우 어려움 : 기준이 매우 높음

귀국비용보험 : 노동자 가입 (법 제15조)

- 귀국 시 필요한 항공료에 대비해 노동자가 가입하는 보험(삼성화재)
- 국가별로 40만원, 50만원, 60만원으로 보험료 다르고 3회까지 분납가능
- 출국 전에 항공권을 예매하여 고용센터에 출국예정신고
- 출국예정사실확인서를 첨부하여 삼성화재 신청하면 출국 전에 수령가능

휴면보험금 (법 제13조의2)

-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 소멸시효가 완성이 된 상태로 보험계약자가 찾아가지 않아 보험회사에서 보관하고 있는 금액
- '외고법' 개정(2014년 7월 29일 시행)으로 휴면보험금이 2014년 8월 29일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 이관
- 휴면보험금 원권리자 본인 또는 직계가족이 신청가능 함



고용허가제와 사회보험

건강보험 (법 제14조)

- 고용허가제 노동자는 직장가입자(사업장변경기간 지역가입)
- 농업 등 사업자등록이 없는 경우 지역가입자(입국 즉시 가입, 보험료 지원 50%?)

국민연금

- 당면적용국가 : 중국, 필리핀, 태국, 스리랑카, 인도네시아, 키르기스스탄
- 귀국 시 일시금으로 수령 가능(공항수령 가능), 사업주 미납시 수령 어려움

산재보험

- 법인이 아닌 상시 5인 미만의 농업, 어업 등은 적용제외(임의가입은 가능)

고용보험

- 21년부터 순차적으로 사업주 부담금만 의무적용(노동자 부담금은 임의가입)

보험 체납 관련 상담

미얀마 노동자가 전용보험 어플을 통해 사측이 출국만기보험을 체납하고 있음을 확인해 상담을 요청함

- ✓ 삼성화재를 통해 체납사실을 확인하고 고용센터에 사업장변경을 요청함
- ✓ 이후 사측이 근로조건 향상 등을 약속하며 노동자들을 회유, 진정취하서를 받아 고용센터에 제출하고 상담이 종료됨

인도네시아 노동자가 출국을 앞두고 국민연금을 확인하니 사업주가 54개월 동안 국민연금을 체납한 사실을 알고 상담을 요청함

- ✓ 사업주에게 확인하니 경영상 어려워 과거 체납분부터 납부하고 있다고 함
- ✓ 경찰서에 횡령죄로 신고하고 민사소송을 제기해 추가로 체류할 수 있는 방안을 협의하던 중 사업주가 노동자 국민연금 공제분에 대해서 지급하겠다고 함, 수령 후 출국

숙식정보 제공 및 비용징수 기준

□ 숙식비 최고 기준

- ✓ 숙소와 식사를 모두 제공하는 경우

아파트, 단독주택, 연립, 다세대 주택 또는 이에 준하는 시설	그 밖의 임시 주거시설
상한액: 월 통상임금의 20%	상한액: 월 통상임금의 13%

- ✓ 숙소만 제공하는 경우

아파트, 단독주택, 연립, 다세대 주택 또는 이에 준하는 시설	그 밖의 임시 주거시설
상한액: 월 통상임금의 15%	상한액: 월 통상임금의 8%

- ✓ 임금에서 숙식비용을 공제하려면 **자국어로 된 서면동의서**를 받아야 함
- ✓ **냉·난방비, 전기요금·인터넷 사용료** 등은 사전 공제 불가능

퇴직금 요구 시 기숙사비 요구

필리핀 노동자는 취업활동기간 만료로 출국하고자 퇴직금 지급을 요청하였는데 사측이 그 동안 받지 않았던 과도한 기숙사비를 요구하며 퇴직금과 마지막 임금을 지급하지 않음

- ✓ 사측에 확인하니 숙식비 공제동의서를 받아 두었다며 지급을 거부함
- ✓ 하지만 실제 임금에서 공제하는 않은 숙식비를 퇴직금에서 공제하는 것은 **위법하기에 노동청에 진정**
- ✓ 진정서 접수증으로 **G-1으로 체류자격 변경**
- ✓ 노동청 출석조사 시 **사업주는 민사소송을 하고 공탁을 하겠다고 우기자 노동자는 빠른 출국을 위해 일부 금액으로 합의하여 수령 후 출국함**
- 최근 소액체당금 지급을 위해 민사소송 진행 중 사측이 이의제기를 해 소송이 길어지는 사례가 증가
- 위 사례와 같은 경우 무조건 소송을 권유하기 어려움



메모

A series of horizontal dotted lines for writing notes.



메모

A series of horizontal dotted lines for writing notes.

2021 민주노총 수도권
이주노동자 상담법률학교

•
•
•
•
•
•
•

|| 3강 ||

이주노동자 건강권 실태와 우리의 과제

이한숙
이주와 인권 연구소 소장



**이주노동자들은
매일 저승사자를 등에 업고
일하고 있다**

한파 속 갑작스런 외국인노동자의 죽음...숨진 캄보디아 여성
살았던 숙소 구조는?

[단독]한파경보에 난방 고장' 비닐하우스 숙소서 이주노동자 숨져

포천 농장 숙소서 캄보디아 여성 숨진 채 발견...
이주노동자센터 “한파에 동사 추정”



영하 20도 한파에 난방조차 되지 않는 열악한 숙소
4년 간 이어진 열악한 노동조건에 고강도 노동
아파도 치료받을 수 없었던 환경



실태를 알기 어려운 이주노동자 산업재해

2018년까지 5년간 증가율		재해자수	사망자수
	선주민 노동자	12.02%	13.65%
	이주민 노동자	13.65%	60.00%

2019년 사망만인율	전체 노동자	이주노동자
	0.46	1.20

심각한 산재은폐율과 낮은 산재인정률



다양해지고 있는 이주노동자 건강문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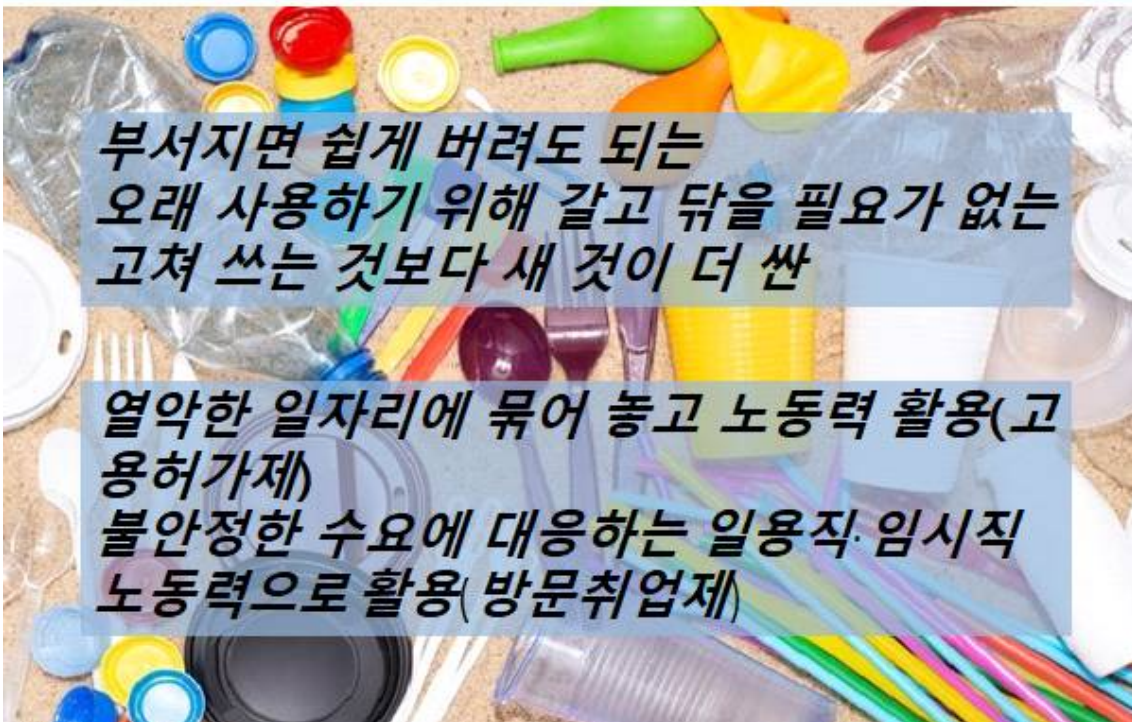


왜
치료를
받지 못했을까?

한국 보건의료의 시장화



일회용 노동자에게 건강권은 없다



의료안전망에서 배제와 차별

의료보장	건강보험	- 외국인등록(국내거소신고)을 한 정규 체류자 - 지역가입 자격, 보험료, 체납 제재 등 전방위적 차별
	의료	- 한국인 임신·양육·부양 중인 결혼이주민 - 난민인정자
위기상황	재난적 의료비	- 한국인 임신·양육·부양 중인 결혼이주민 - 난민인정자+건강보험 직장가입자 - 고려인동포 중 영주(F-5)+건강보험 직장가입자
	긴급복지지원	- 결혼이주민, 난민인정자, 인도적체류허가자 - 본인 귀책 없이 범죄, 천재지변, 재난 등 피해자
	응급의료	- 유일하게 외국인 비차별 조항 명시

아파도 치료받지 못하는

의료기관 이용경험	구분	응급이용	입원	외래이용
	이주민(2020)	8.5%	10.7%	32.2%
	내국인(2017)	8.7~8.3%	10.5~11.3%	83.3~84.9%

이주민 의료미충족률 28.2% (내국인 11.5%)



2020 이주민 건강권 실태와 의료보장제도 개선방안 연구

열악한 일자리, 더욱 심각한 건강 실태

	제조업	건설업	농축산어업
주관적 건강 인지율	51.0%	47.9%	29.1%
건강검진 경험	66.3%	70.8%	18.4%
미충족 의료율	17.0%	22.3%	52.4%

* 이주민 건강권 실태와 의료보장제도 개선방안 연구 (2020)

“기숙사가 깨끗하지 않고, 겨울에는 난방도 되지 않아 춥다. 일도 힘들고 휴식 시간도 제대로 없고 많은 시간 동안 일을 하는데 사장님은 항상 힘든 일을 시킨다. 점점 몸이 안 좋아지는 것을 느낀다.” (30대 캄보디아 여성 농업노동자)

열악한 일자리, 더욱 심각한 건강 실태

미충족 의료 이유

	제조업	건설업	농업	어업
시간이 없어서	53.5%	23.8%	65.3%	60.0%
거리가 멀거나 교통이 불편해서	7.0%	14.3%	24.5%	80.0%
의료진과 의사소통이 어려워서	25.4%	4.8%	53.1%	40.0%

“섬에는 병원이 없고 보건소만 있다. 병원 가려면 배 타고 나가야 하는데 병원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니까 사장님이 데리고 가지 않으면 갈 수 없다.” (30대 베트남 남성 어업노동자)

지역가입자가 되면?

“먹튀”, “무임승차”, “부정수급”

부도자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공약 ⇒ 건강보험료 인상에 대
한 반발을 무마하는 희생양 만들기

배 포 일	2018. 6. 7. / (총 4 매)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	과 장	정 경 실	전 화	044-202-2710
	담 당 자	유 미 란		044-202-2706
법무부 체류관리과	과 장	이 덕 룡		02-2110-4055
	담 당 자	김 명 훈		02-2110-4062
국무조정실 부패예방감시단	과 장	진 재 훈		02-3703-2054
	담 당 자	정 진 필		02-3703-2055

**외국인 및 재외국민 건강보험 제도 개선으로,
도덕적 해이는 방지하고 내·외국민간 형평성은 높인다!**

- 외국인도 국내에 6개월 이상 거주하면 건강보험에 의무가입-
- 보험료 체납하면 체류기간 연장·재입국 시 체류기간 제한 등 불이익-

국민건강보험법
[법률 제14084호, 2016. 3. 22, 일부개정]

제109조(외국인 등에 대한 특례)

③ 제2항에 따른 직장가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국내체류 외국인등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제5조에도 불구하고 **공단에 신청하면** 지역가입자가 **될 수 있다**. <신설 2016.3.22>

**2019.7.16.부터
건강보험 지역가입
의무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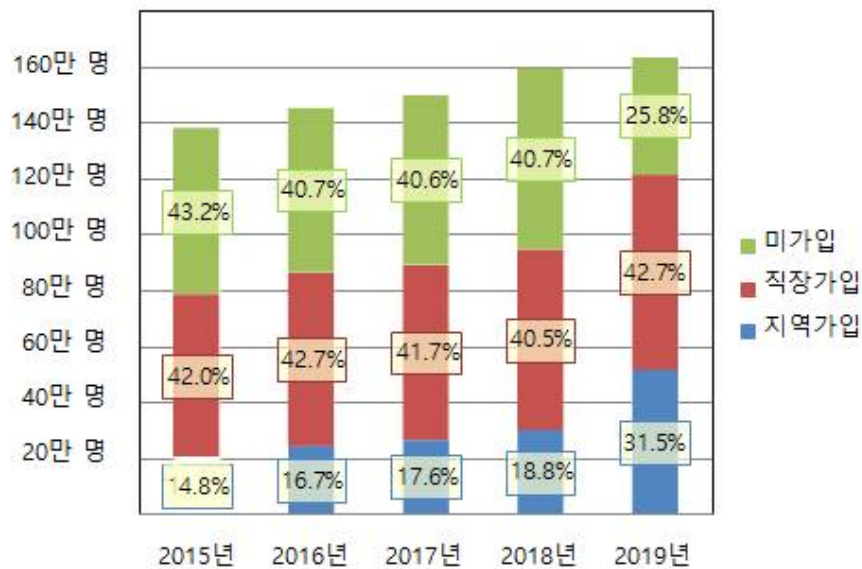
국민건강보험법
[법률 제16238호, 2019. 1. 15, 일부개정]

제109조(외국인 등에 대한 특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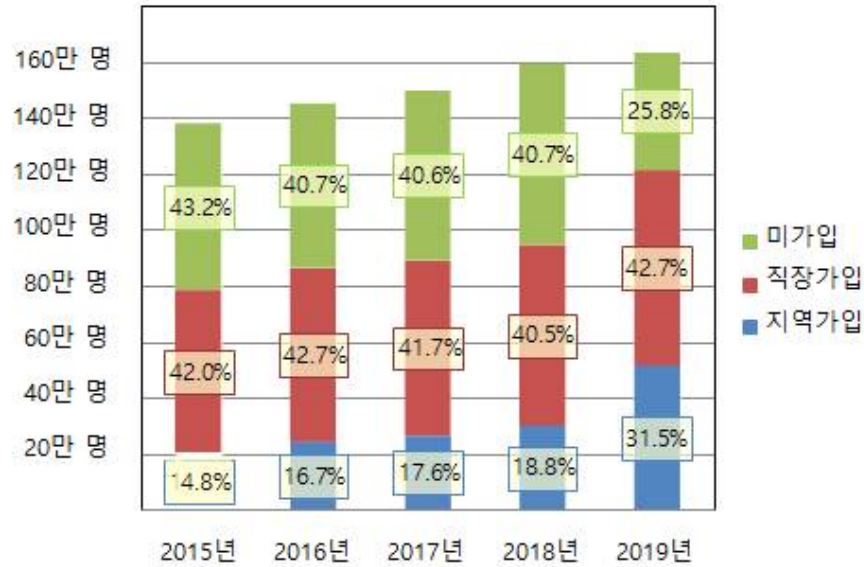


③ 제2항에 따른 직장가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국내체류 외국인등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제5조에도 불구하고 지역가입자가 **된다**. <신설 2016.3.22, 2019.1.15>

등록 장기체류자 건강보험 가입자 현황



등록 장기체류자 건강보험 가입자 현황



왜 등록 장기체류자조차 건강보험 가입률이 낮은가?

지역가입 의무화 이전 평균 보험료 이상(F1, F2, F5, F6 제외) 입국 후 3개월~가입 시점 한 번에 완납해야 임의가입 가능

의료취약계층에 대한 보험료 감면 적용 배제

지역가입 의무화 이후에도 6개월 미만 체류자, G-1(인도적 체류자와 그 가족 제외), 유학생(2021년 3월까지 당연가입 유예) 지역가입 불허

지역가입자에 대한 차별 강화

자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소체류 요건 3개월 → 6개월 (F6 제외) - G-1 가입 불허 유지 (인도적체류허가자와 가족만 허용)
보험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균보험료 이상 부과 대상 확대 (제외 : F1, F2, F5, F6 → F5, F6) - 미성년 세대주 납부의무면제 배제 (하한 보험료 이상) - 취약계층 보험료 감면지원 제도 배제 (체류자격에 따른 경감)
세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배우자, 19세 미만 자녀만 세대 합가 허용 - 가족관계 증명 요건 강화

공단이 정한 평균보험료

년도	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합계보험료
		보험료율	보험료	
2019	104,190	8.51%	8,860	113,050
2020	111,640	10.25%	11,440	123,080
2021	118,180	11.52%	13,610	131,790

체류자격별 지역가입 보험료와 보험료 감면

세대주가 난민인정자(F-1), 난민인정자의 가족(F-2), 미성년자	하한 보험료(2021년 16,030원) 이상
종교(D-6)	30% 감면
인도적체류허가자(G-1-6)와 그 가족(G-1-12)	30% 감면
유학(D-2), 일반연수(D-6) (연간 소득 360만원 또는 재산과표 13,500만원 초과 시 경감 대상에서 제외)	2021.3~2022.2 70% 감면 2022.3~2023.2 60% 감면 2023.3~ 50% 감면

지역가입자에 대한 차별 강화

체
납
제
재

- 보험료 미납 시 **체류연장 불허**
- **선납(25일) 보험료 미납 시** 다음달 1일부터 완납할 때까지 급여 제한
- 분할납부 가능하지만 완납할 때까지 급여 제한
- 보험료를 완납하더라도 급여 소급은 되지 않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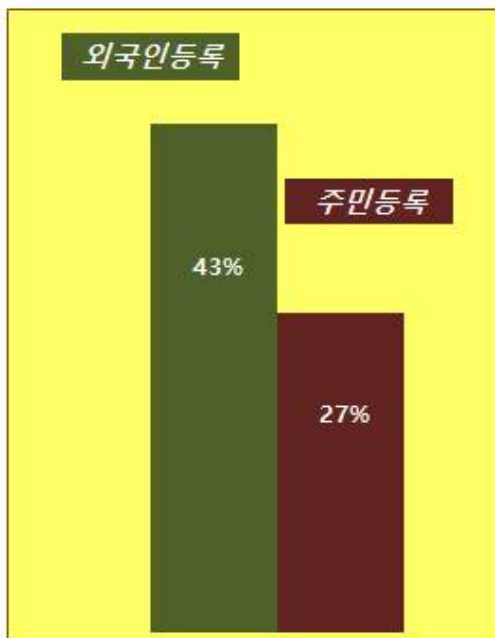
'내국인'의 급여 제한

- ✓ 총체납횟수 6회 이상이면 급여제한 통지
- ✓ 급여제한 기간 중 진료를 받으면 일단 급여 실시 후 체납보험료 납부 안내
- ✓ 급여제한 통지일부터 2개월 경과일이 속한 달의 납부기한 내 완납 혹은 분할납부를 시작하면 급여 인정
- ✓ 분할납부 5회 이상 정당한 사유 없이 미납 시 급여 제한

땀이 아파서 일을 그만두었다. 소득이 없어져서 보험료를 내지 못했다.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싶었지만 보험이 끊겨서 너무 비쌌다. 하는 수 없이 치료를 포기했다. 그런데 체류기간을 연장하러 출입국에 갔더니 보험료를 내야 연장해준다고 했다. 보험료를 분납하기로 하고 연장을 받았다. 하지만 미납 보험료를 완납하기 전까지는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나는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당분간은 보험료를 낼 수 있는 여력이 없다. 이것은 나에게 끔찍한 악순환이다.”

노동자인데 왜 지역가입자일까?

왜 지역가입자 비율이 높을까?



1. 사업자등록증 없는 사업장 노동자의 직장가입 배제
2. 탄력적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임시직·일용직 불안정 고용의 공급자
3. 당연가입사업장 직장가입 취득신고 감독 부재
4. 비상근·단시간 근로자 직장가입 배제 조항의 한계 및 악용

1. 사업자등록증 없는 사업장 노동자 직장가입 배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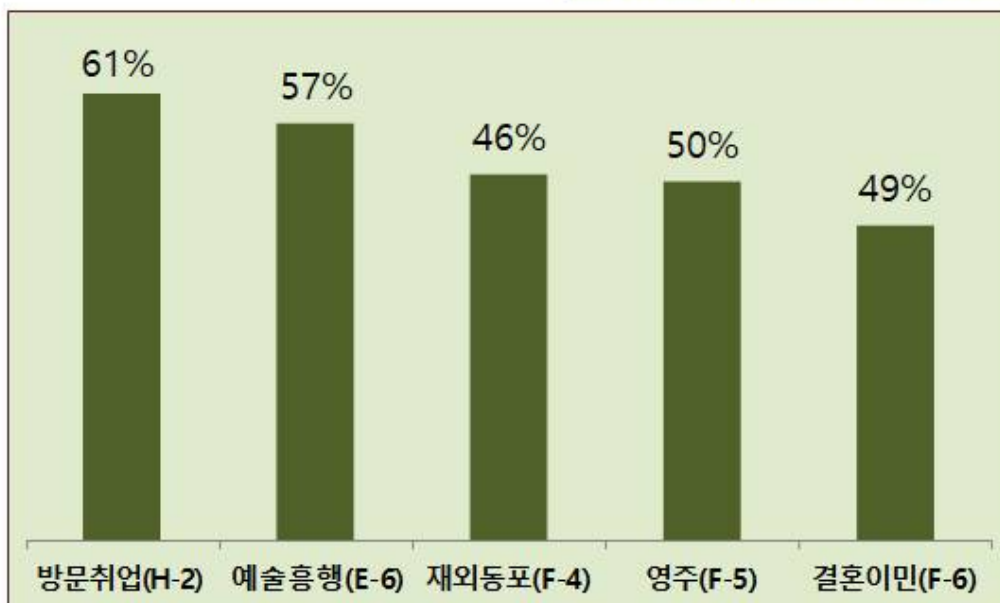
	고용허가제 (E-9)			어선원 (E-10-2)
	제조업	농업	어업	
취업자 수	196,294	21,868	7,522	10,051
직장가입자 수	144,240	7,877	1,944	5,476
직장가입 비율	81.0%	36.0%	25.8%	54.5%

2021년 고용노동부 발표

- 고용허가제 노동자 입국 후 즉시 건강보험 지역가입 적용
- 농어촌 건강보험료 경감 적용

2. 임시직·일용직 불안정 고용

체류자격별 지역가입률



3. 당연가입사업장 취득신고 감독 부재

- 신고 의무 위반 과태료 부과는 공단은 권한이 없다?
- 노동자가 타 4대 보험 공단 취득확인서, 근로감독관 체불확인서 등을 제출하여 가입의사를 밝히면 확인절차를 거쳐 직권 가입 가능
(2020.9. 건강보험공단 내부 지침)

- ❖ 이주노동자 고용보험 적용제외, 비법인 5인 미만 농업 사업장 산재보험 적용제외, 국민연금 출신국에 따라 적용제외인데 타 4대 보험 취득확인서 요구
- ❖ 건강보험료를 공제하면서 취득신고를 하지 않은 사업주에 대해 다른 대응방법이 없기 때문에 임금체불로 진정해 온 것인데 체불확인서 요구

참고 : [고용보험법] 제15조 3항 신설 (2002.12.30)
고용관계 증명 서류를 제출하면 노동자가 신고 가능

4. 비상근·단시간 근로자 배제 조항의 한계와 악용

비상근 근로자 또는 1개월 동안 소정근로시간 60시간 미만 단시간근로자 직장가입에서 배제(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9조)로 불안정 고용 노동자들이 직장가입을 할 수 없는 한계

- ✓ 해당 조항을 악용하여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고용허가제 이주노동자의 직장가입 취득신고를 거부하는 사례들이 있음
- ✓ 공단은 사업주가 신고하는 데로 처리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

의료안전망에서 완전히 배제된 이주노동자들

외국인근로자 등 의료지원사업의 한계

- 의료보장에서 배제된 미등록 이주노동자에게 수술·입원비 지원
- 의료급여 수가 적용, 비급여 항목은 별도 기준으로 의료비 산정
- 국비와 지방비 7:3으로 재원 마련

- ✓ 의료기관 제한 / 입원·수술비 위주 지원 / 대상자 확인 과정 등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문제에 더해
- ✓ 적용대상은 확대하면서
외국인근로자(2005) → 외국인근로자와 그 자녀, 결혼이민자와 그 자녀(2006) → 난민인정자, 난민신청자, 인도적체류허가자와 그 자녀(2010) → 외국인 근로자의 임신 중인 배우자(2017)
- ✓ 예산은 정체
아파도 상반기에 아파야 한다 ⇒ 지자체와 지정의료기관의 진료 거부

의료 시장화의 끝판왕 – 외국인 수가

- ✓ 의료관광 진흥 목적
- ✓ 의료이용 목적 입국자(C-3-3, G-1-10)에 국제(외국인)수가 적용
- ✓ 대다수 의료기관이 미등록 체류자에게 국제수가 적용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외국인환자에서 제외되는 외국인의 범위)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라 외국인환자에서 제외되는 외국인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한 사람[「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2조 및 별표 1에 따른 기태(G-1)의 체류자격을 가진 사람은 제외한다]
2.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

100%가 아니다

수가별 본인부담금 비교 사례

	국제수가	일반수가	건강보험수가
건강보험 없음	16,000,000원	10,000,000원	6,000,000원
건강보험 있음			1,200,000원

- ✓ 수가 책정은 의료기관 내부 지침에 따르므로 협력 혹은 적 극적 항의 필요
- ✓ 건강보험 가입자에게는 보험료 체납 상황이라도 건강보험 수가를 적용해야 함. 그러나 체납으로 급여제한 중인 이주민에게 국제수가, 일반수가를 적용하는 사례들이 있음

기타 상담사례와 건강보험제도

이직(사업장변경) 시 건강보험

- 퇴사 처리가 되면 지역가입자로 당연가입
- 직장가입 보험료 납부일(후납 10일), 지역가입 보험료 납부일(선납 25일) 차이로 인한 문제

임의계속가입제도

- ✓ 이주노동자에게도 적용
- ✓ 퇴사 전 직장가입자격 기간이 18개월 동안 통산 1년 이상인 경우
- ✓ 최초 고지 받은 지역가입 보험료 납부기한 **2개월 이내** 신청해야 함
- ✓ 지역가입보험료와 임의계속가입자 보험료(직장가입 당시 보험료) 중 낮은 쪽으로 선택 가능

노인장기요양보험

- 기술연수(D-3), 비전문취업(E-9), 방문취업(H-2) 자격자 중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만 가입제외 신청 가능
- 그 외는 의무적으로 장기요양보험료를 부담해야 하며 영구 출국 시에도 환급되지 않음
- 신청 시 그 피부양자도 장기요양보험 제외, 직장가입자 유지기간 동안 재가입 불가능, 직장 이동 시에도 가입제외 유지

이주노동자 가족의 건강보험

- 피부양자 자격 조건은 '내국인'과 동일 (단 사실혼 배우자 제외)
- 지역가입자가 될 수 없는 기타(G-1) 자격자라도 피부양자가 될 수 있음
- 기술연수(D-3),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방문취업(H-2), 재외동포(F-4) 자격사의 국내출생 사녀는 부 또는 모의 체류기간 범위 내에서 방문동거(F-1) 자격을 받을 수 있음
- 신생아는 출생한 날 건강보험 가입자격 취득
- 공단은 가입 전 외국인등록 요구, 법무부는 외국인등록 전 여권(출생등록)을 요구하지만 여권 없이 외국인등록을 먼저 하고 건강보험 가입한 사례들이 있음

납부고지서를 받지 못했을 때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시행 2021. 6. 30.] [보건복지부령 제810호, 2021. 6. 30. 일부개정]

제48조의2(납부기한의 연장) ① 법 제78조제2항 전단에서 “납입 고지의 송달 지연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납부의무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납입고지서가 납부기한이 지나서 송달된 경우
2. 자동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보험료를 내는 경우로서 정보통신망의 장애 등 납부의무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납부기한까지 미체되지 아니한 경우
3.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납부기한의 연장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해당 보험료의 납부기한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28호의2서식의 보험료 납부기한 연장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공단은 제2항에 따른 납부기한 연장 신청을 받으면 그 연장 여부를 결정하여 지체 없이 납부의무자에게 문서 등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3. 9. 30.]

무지하고 불친절하고 돈에 혈안이 된

지사에서 할 수 있는 업무도 외국인민원센터로 보낸다

말도 안 통하는데 상담은 본인만 할 수 있다고 우긴다 대

부분 신고와 이의신청이 온라인으로 안되고 절차도 없다

체납 정보는 공단과 법무부 간에 온라인으로 신속하게 공유
해 체류자격 연장 시 보험료 완납을 독촉하면서

의료기관과 자격 변동을 제 때 공유하지 않아 급여를 실시해
놓고 나중에 “부당이득”이라며 환수 조치한다

출국유예 받았거나 G-1으로 변경한 후에도 고지서를 발급하고
콜센터와 지사 직원은 보험료를 내야 한다고 우긴다. 심지어
출국 후에도 보험료를 빼간다

외국어 콜센터를 만들었는데 콜센터 직원이 아는 게 없다

이주노동자 건강권의 과제

이주노동자 건강권 보장을 위해

- ✓ 건강권은 생존과 직결되는 기본권이다
- ✓ 건강권은 건강할 권리, 보건의료에 관한 권리, 보건의료체계 내에서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보장받을 권리뿐 아니라 소득, 교육, 주거, 노동, 고용, 차별 금지와 같은 건강의 사회적 결정 요인을 모두 포함한다
- ✓ 국적과 체류자격에 따른 차별이 사회보험으로서 건강보험의 연대 원칙을 훼손하고 있다
- ✓ 의료의 공공성 강화 없이 이주노동자 건강권 개선은 불가능하다

이주노동자 건강권 보장을 위해

- ✓ 사회보장 적용 확대
- ✓ 의료보장 적용 확대
- ✓ 직장가입률의 제고
- ✓ 지역가입 차별 폐지
- ✓ 정확하고 투명한 정보
- ✓ 국제수가 폐지



메모

A series of horizontal dotted lines for writing notes.